관리 번호	사회재난-19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원전 안전분야 (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21. 12.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 지침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1 년 12월 21 일

담 당 위해예방정책과 주무관 차 상 준
확 인 위해예방정책과 과 장 주 선 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 지침서는 국내 원자력시설 사고에 의한 방사능누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위기대응 업무를 표준화하여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본 지침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하위 실무매뉴얼로서, 식·의약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위기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별도 규정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21년 12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723
팩스번호: 043-719-1710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원전 안전 분야(방사능누출사고 부분)」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목 차 -

Ⅰ. 일반 사항

1. 목 적 ····· 15

2. 적용 범위 ····· 15

3. 관련 법규 ····· 15

4. 용어 정의 ····· 16

Ⅱ. 위기 유형와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 21

2. 전개 양상 ····· 21

3. 위기관리 체계 ····· 22

가. 종합체계도 ····· 22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23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 25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31

2. 방 침 ····· 31

3. 위기징후 감시 ····· 32

가. 위기징후 목록 ····· 32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32

4. 위기평가 ····· 33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33

가. 위기경보 수준 ····· 33
나. 위기경보 절차 ····· 34
6. 비상근무체계 ····· 39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백색비상
가. 상황 ····· 43
나. 조치사항 ····· 44
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 ····· 45
2. 청색비상
가. 상황 ····· 46
나. 조치사항 ····· 46
다. 조치내용 ····· 47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 ····· 50
3. 적색비상
가. 상황 ····· 52
나. 조치사항 ····· 52
다. 조치내용 ····· 53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 ····· 57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백색비상 ····· 65
2. 청색비상 ····· 66
3. 적색비상 ····· 67

Ⅵ. 기관대응수칙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71
2. 식약처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재난대응 프로세스 ····· 72
3. 관련 부서·부처별 협업기능 ····· 74
4. 관계기관 주요 임무(국내원전 방사능 누출) ····· 76
5. 비상연락망 ····· 80

Ⅶ. 부 록

1. 방사선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 85
2. 주민보호 및 구호조치 ····· 94
3. 방사능에 대한 Q&A(예시) ····· 101
4.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 107
5. 위기대응 업무흐름도 ····· 131
6.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132
7. 공문서 등 작성(예시) ····· 134

제·개 정 이 력

제 목	원전안전(방사능누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0 ('15.12)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신규 제정	표준매뉴얼에 따라 실무매뉴얼 제정
1 ('16.7)	○ 기관대응수칙 추가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비상연락망 등 정비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및 비상연락망 정비
2 ('17.12)	○ 식약처 직제개정 및 정부 직제개정 반영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정 반영 ○ 용어, 기준,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등	식약처 직제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정(문체부)
3 ('18.5)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비상연락망 등 정비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및 비상연락망 정비
4 ('19.7)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사항 반영)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실무매뉴얼 개정 요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325, '19.03.05)
5. ('20.12.)	○ 식약처 직제개정 반영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식약처 직제개정 방사능기준 개정
6 ('21.12.)	○ 위기대응조직 구성 수정 ○ 용어, 기준 등 현행화	식약처 원전사고 모의훈련('21.10.) 개선사항 반영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개정(문체부) 반영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1 목 적

○ 이 실무 매뉴얼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규정

2 적용 범위

○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관련 단체 등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3 관련 법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8238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원전 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2.)

4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비상상황	•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결과 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 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 증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위기경보 수 준	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한다. 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관련 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

구 분	내 용
위기관리 활동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사보타주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재산·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방사능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 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 Ci(큐리) = 3.7^{10} Bq
방사선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알파입자, 베타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옥내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으로 구분 ※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UPZ :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가. 재난 원인

(1)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2)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나. 재난 유형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해 주변지역 가축·식품 오염, 인근 지역주민 방사선 피폭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2 전개 양상

- ❍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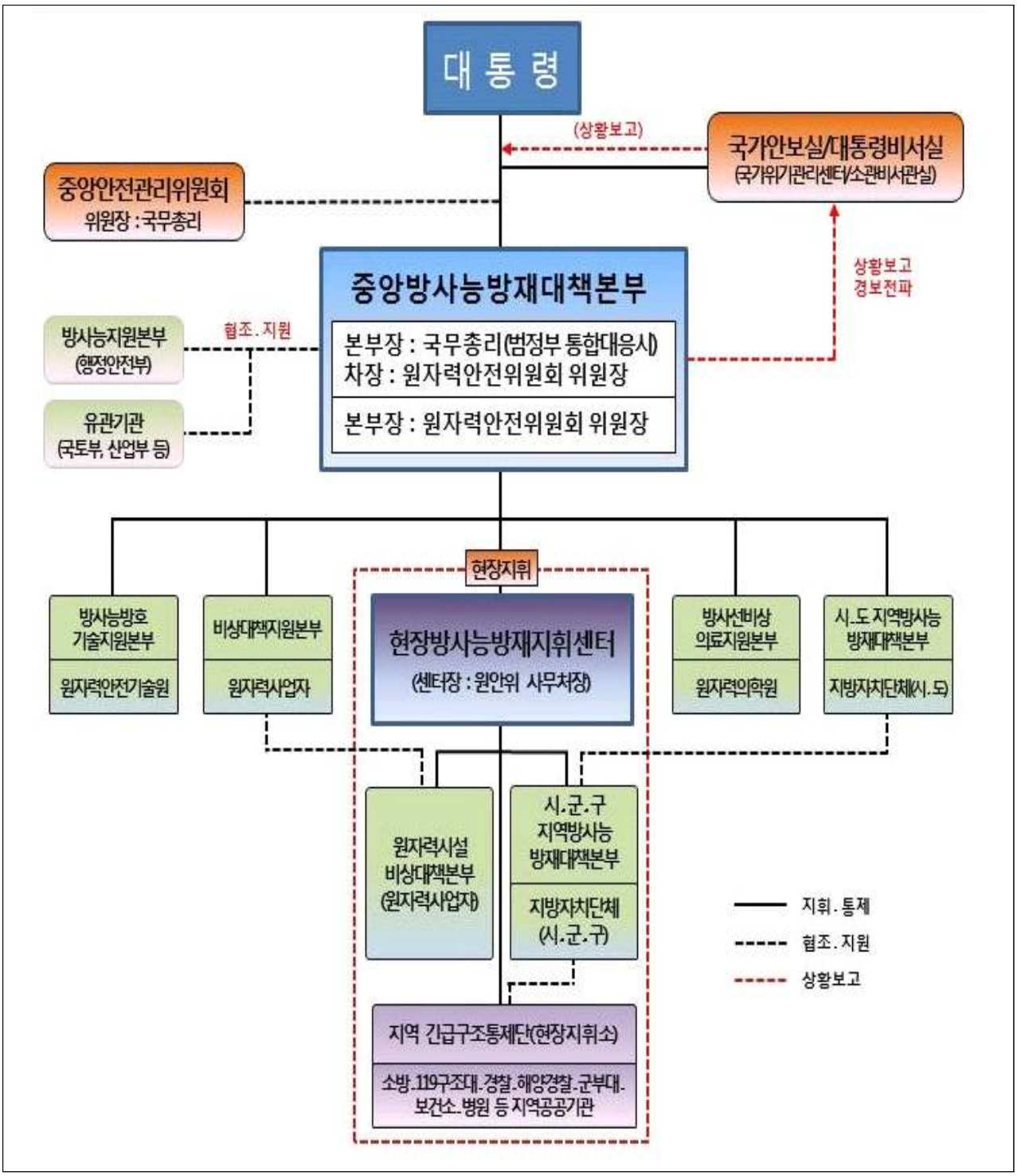
❍ 원자력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

⇩

- ❍ 발전소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 ❍ 인근지역 농·수산물, 가축 및 취수원 오염
- ❍ 방사성물질의 침적으로 인한 피해확산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 유관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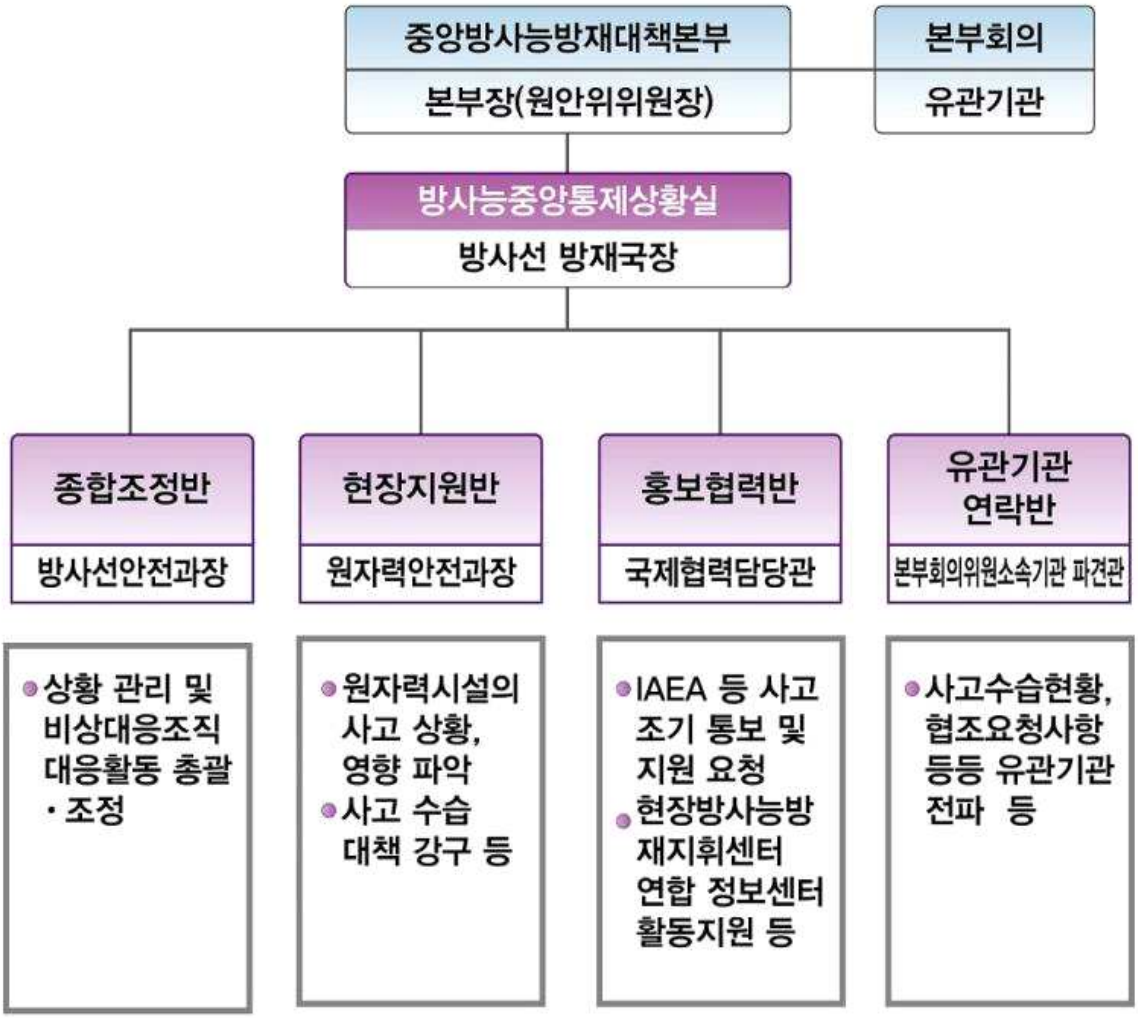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o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 o 방사능 재난의 평가 및 발생의 선포 o 재난수습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총괄  * 본부회의 참석 유관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유관기관 연락반 : 본부회의 위원 소속기관 파견관 등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o 방사능재난 현장대응활동 총괄 지휘 o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관 o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및 방재요원 임무 부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임무와 역할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시·도 및 시·군·구)	o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의 이행 o 지방행정기관과의 행정조치 및 업무 협조 o 긴급구조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비상대응시설 가동 및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복구 현황 보고 o 사고확대 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o 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 등 비상대응활동 수행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	o 사고해석 및 평가·예측 o 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 평가 o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o 방사선피폭 환자 제염·치료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조정실)	o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o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o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연락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 능

구 분			주 요 역 할
중앙 방사능 방재 대책 본부	본부회의		o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등 의결
	방사능 중앙 통제 상황실	종합 조정반	o 중앙본부장,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에 상황 종합 보고 o 상황정보 종합관리 o 본부회의 운영 o 실무반 역할 조정 및 운영
		현장 지원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사고예측 결과 종합 o 현장지휘센터 대응활동 및 지원필요사항 종합 검토 o 사고 수습대책 강구
		홍보 협력반	o 연합정보센터 운영지원 o 재난온라인방송, 재난 문자전송 요청 o IAEA 및 주변국에 사고 정보 제공 및 지원 요청
		유관기관 연락반	o 본부회의 안건 실무 검토 조정 o 본부회의 의결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소속 부처 전파 및 이행 종합 o 해당 유관기관 상황정보 공유 및 업무 연락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합동방재 대책협의회	o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자문
		연합정보센터	o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총괄
		종합조정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간 업무조정
		사고분석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o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
		방사선 평가반	o 현장 방사선영향평가 및 긴급 방호활동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 활동 총괄.지휘

구 분		주 요 역 할
	주민보호반	o 주민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황파악, 종합 및 자료관리
	의료지원반	o 비상의료 대응 관리 및 지원활동 총괄.지휘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운영 및 총괄
	운영지원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입인원.장비의 통제
	합동방사선 감시센터	o 현장 방사선감시 및 평가.분석 o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오염 관리
	합동방사선 비상진료센터	o 현장방사선비상진료 총괄 조정
시·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시·군·구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o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o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지원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사고 확산방지 및 수습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가.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원자로의 방사능 누출 사고 예방·대비

나. 방사능 누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방재체계 가동

2 방 침

가. 방사능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1)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검사

나.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응시스템 확립

(1) 방사능 방재기관의 대응태세 정비

(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사전지정 등 신속 구조·구급체계 사전 구축

다.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 가동

(1)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및 방재 대응시스템 가동

(2) 2차 사고에 대비한 대비·대응 활동

라.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대국민 홍보

3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 형태 (4개)	위기징후 (5개)	감시수단 (9개)	감시방법	조치 (대비・대응)
1. 원자력 시설 사고·고장	1.1 원전 불시정지 ※ 각종 수동 및 자동정지 포함	○ 한수원 원전 종합 상황실 (24시간 근무)	○ 원전 운전변수 감시 ○ 조기경보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소 건전성 확인	○ 불시정지 대비 대응 태세 가동 ○ 사고·고장 및 특이징후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 KINS AtomCARE 시스템	○ 원전 운전변수 감시	
	1.2 각종 검사·점검 과정에서 특이징후 발견	○ 일상검사, 특별검사	○ 검사과정에서 발행된 지적사항표 등	
2. 지진	2.1 지진 진동 감지	○ 지진감시기 계측값 (기상청, 원전, KINS)	○ 지진감시기 모니터링 ○ 기상청 지진정보 발표	○ 감시 강화, 지진영향 분석, 상황대응반 운영
3. 태풍	3.1 태풍 등에 의한 특이징후 발생	○ 기상청 예보 ○ 원전 기상감시	○ 기상예보 모니터링 ○ 원전 기상상황 감시	○ 재난 감시 강화, 사전 대비태세 점검, 상황 대응반 운영 ○ 특이징후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 (지역사무소) ○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4. 화재	4.1 방사선관리구역 내 화재발생	○ 화재감시기 ○ 운전원 ○ 외부소방서	○ 화재감시기 모니터링 ○ 운전원 현장순시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1) 위기징후 목록에 따른 감시수단과 감시방법 등 징후감시체계를 구축

- 감시수단이 통계인 경우 통계 생산 · 관리 체제 마련

- 타 기관 ·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체계를 구축

(2) 위기징후를 징후감시체계를 통해 감시하고, 징후 포착시 그 정보를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 · 공유

(3) 위기징후 감시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공유·전파

4 위기평가

(1) 주관기관은 상황의 심각성 · 시급성 · 확대가능성 · 전개속도 · 지속시간 · 국내외여론 등을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

(2) 주관기관은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 운영

(3)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위기징후 감시 ·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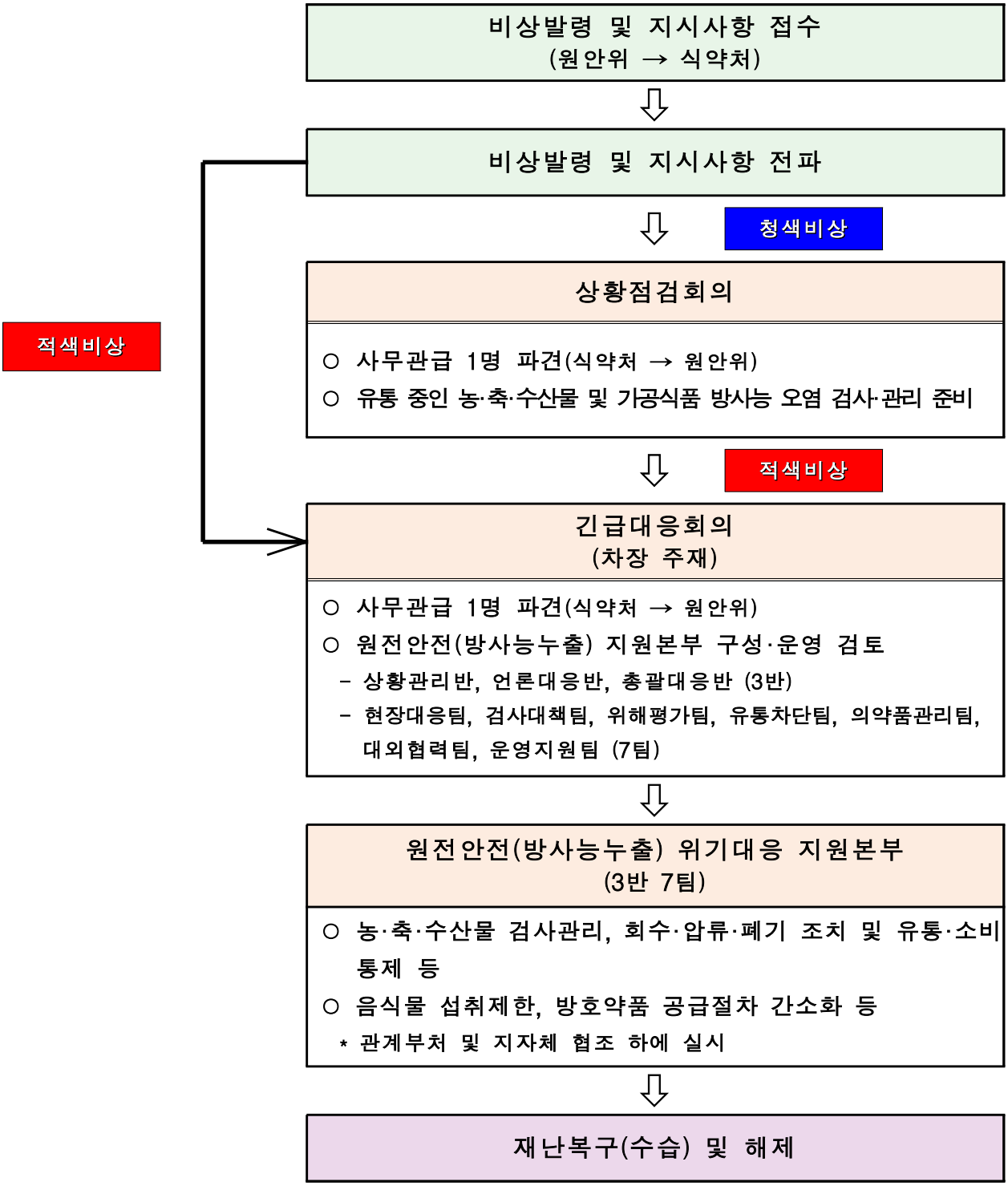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방사선 비상단계	판단기준	비 고
관심 (Blue)	-	o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	-	o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경보 발생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 계획 점검
경계 (Orange)	백색 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체계 가동
심각 (Red)	청색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즉각대응조치 시행
	적색비상		

※ (방사선비상 이전)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
(방사선비상 이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 이행

나. 위기경보 절차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접수
(원안위 → 식약처)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전파
청색비상
상황점검회의
○ 사무관급 1명 파견(식약처 → 원안위)
○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방사능 오염 검사·관리 준비
적색비상
적색비상
긴급대응회의
(차장 주재)
○ 사무관급 1명 파견(식약처 → 원안위)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지원본부 구성·운영 검토
- 상황관리반, 언론대응반, 총괄대응반 (3반)
- 현장대응팀, 검사대책팀, 위해평가팀, 유통차단팀, 의약품관리팀, 대외협력팀, 운영지원팀 (7팀)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3반 7팀)
○ 농·축·수산물 검사관리, 회수·압류·폐기 조치 및 유통·소비 통제 등
○ 음식물 섭취제한, 방호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등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 하에 실시
재난복구(수습) 및 해제

비상발령 상황 접수·공유

(1) 방사선 비상발령 상황 등 지시 접수(위해예방정책과)

○ 원안위로부터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를 접수

- 전파내용 ① 방사선비상의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②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 요청

(2) 비상발령 상황 및 대응조치 지시내용 전파·보고(위해예방정책과)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사항' 및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등 주요정보를 관련 부서장에게 신속 공유

* 인트라넷 START → 공지 → 글쓰기 → 내용입력 → 저장

○ 주요 정보사항을 처·차장에게 보고

상황점검회의 구성·운영

(1) 구성

○ 차장(주재),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대변인, 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TF장, 위해정보과장, 시험검사정책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식품관리총괄과장, 식품기준과장, 유해물질기준과장, 축산물안전정책과장,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관련 부서 과장 등

* 차장 부재 시 참석자 중 직제 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 주재, 사안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참석 범위 조정

(2) 운영

○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 원안위원장)로부터 청색 비상 통보를 받은 경우 차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 개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국장이 참석 범위 조정

(3) 역할

○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관리 준비
- 대상제품의 종류, 수거·검사 여부 및 범위
- 원전사고 시 방사능 누출 및 방사능 오염이 예상되는 해당 및 인근 지역의 검사기관 및 검사장비, 시료 등

○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조치방안 검토

○ 관련 기관 보고·협조

○ 대국민 홍보방법 및 시기(원안위 사전협의)

○ 원안위 요청 시,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연락반)에 식약처 파견자 검토(사무관급 1명을 위해예방정책과에서 추천)

긴급대응회의 구성·운영

(1) 구성

○ 차장(주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기획조정관, 대변인,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위해평가부장

○ 위해예방정책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식품관리총괄과장, 식품기준과장, 유해물질기준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축산물안전정책과장,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위해정보과장, 소통협력TF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관련 부서 과장 등

* 차장 부재 시 참석자 중 직제 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 주재, 사안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참석 범위 조정

(2) 운영

○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적색비상 통보를 받은 경우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처·차장에게 긴급대응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기획조정관·소비자위해예방정책국장이 참석범위 조정

(3) 역할

○ 정보분석 내용 검토

○ 생산, 출하 또는 유통단계 수거·검사 범위 및 검사체계 점검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검토

- 3개반 7개팀의 역할 검토·부여
- 필요 시 소속 팀장 및 팀원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

○ 대국민 홍보방법 및 시기(원안위 사전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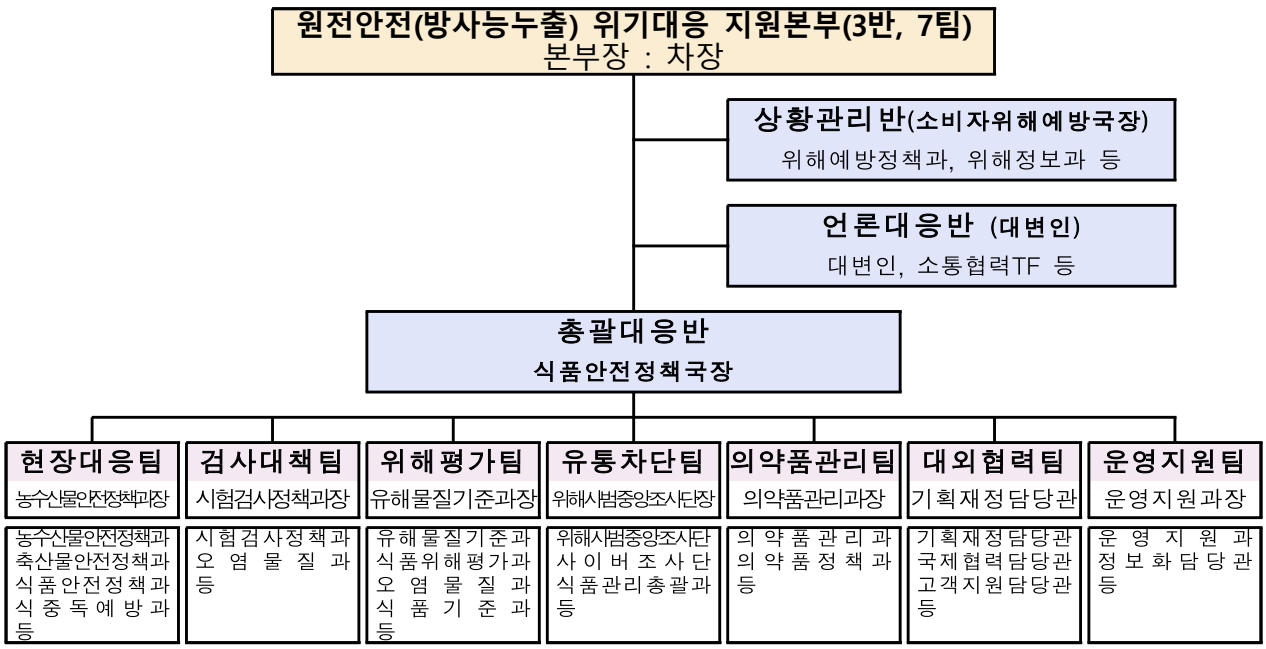
○ 원안위 요청 시,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연락반)에 식약처 파견자 검토(긴급대응회의에서 파견자 선정)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1) 구성

○ 차장(본부장, 필요시 처장), 본부(평가원 포함) 관련부서 직원(사무관/주무관)으로 각 반/팀을 구성하고, 관련과장을 팀장으로 임명

○ 상황관리반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을, 언론대응반장은 대변인을, 총괄대응반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임명



< 반·팀별 역할(임무) >

구 분		역 할
상황관리반		o 지원본부 내 관련 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o 원안위와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o 각 팀별 일일상황보고서 취합 작성 및 보고
언론대응반		o 언론 및 여론 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상담센터 운영
총괄대응반	현장대응팀	o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행 o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에 대한 회수·압류·폐기 총괄 o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검사대책팀	o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위해평가팀	o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o 섭취제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 검토
	유통차단팀	o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점검
	의약품관리팀	o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 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o 방사선 방호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대외협력팀	o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 업무 o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운영지원팀	o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
지방청 및 지자체		o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 현황 파악 o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회수·압류·폐기 업무 지원

(2) 운영

○ 상황에 따라 동 지원본부 조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운영 가능

- 소속 팀장 및 팀원은 위해예방정책과에서 총괄대응반장과 협의하여 운영지원과에 인사발령 요청(필요 시)

○ 일일상황보고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체계적 대응

- 위기 종결 시까지 '일일 지원본부 회의' 개최
- 각 팀별로 당일 16:00까지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황관리반은 이를 취합하여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처·차장 및 원안위에 이행 현황 및 결과 등 주요내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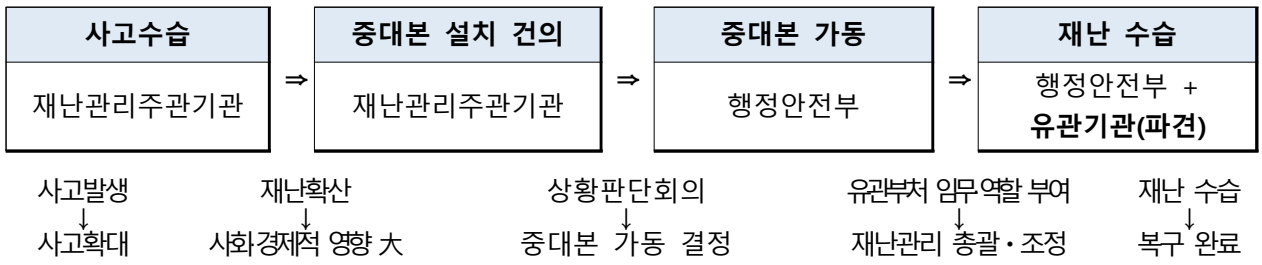
재난복구 및 해제

원안위에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사능재난 수습현황, 재난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방사능재난 해제

6 비상근무체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파견 근무

○ **(파견시기)**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주관기관 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요청 시, 식약처 파견자 선정(총괄대응반장이 관련업무 수행 사무관급 1명 추천)



○ **(파견인원)** 사무관급 1명 / 24시간 3교대

* 필요시 재난규모, 확산 가능성 등 재난양상에 따라 추가로 파견

○ **(주요임무)** 부처별 재난수습상황 및 지원·협력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수습상황,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 수습상황보고서 등 각종 자료 입수, 피해현황·조치상황 파악 보고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수습상황 파악 보고 및 조치사항 전파 등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백색비상

가. 상황

»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가 안전주입계통 주입배관의 소규모 누설로 냉각재가 00 누출됨(백색비상 발령조건 이상)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 세부 내용

-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발전소 0호기
- 사고개요 : 00 원전 0호기 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 기술
- 피해상황 : 사상자 0명, 방사선피폭환자 00명
- 원자력사업자의 대응활동 현황
- 기타 : 특이사항

나.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 고
상황확인	o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백색비상 발령 확인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o 위해예방정책과
조치절차	o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사항' 및 SMS 문자메시지)을 통해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등 주요정보를 국·부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신속 공유 o 원안위 관련 정보 확인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필요시 상황점검회의 개최 요청	o 위해예방정책과 o 위해정보과
대응조치	o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농·수·축산물 생산현황 파악, 검체 채취 장비 현황, 시험법 현황 등 검토 -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 파악 -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여론동향 파악 -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 시험법 검토 o 관할 지자체 대응현황 정보 수집 및 보고 - 위해예방정책과에 일일상황보고(필요 시)	o 농수산물안전정책과 o 축산물안전정책과 o 식품관리총괄과 o 식중독예방과 o 대변인실 o 시험검사정책과 o 유해물질기준과 o 평가원 o 지방청

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징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비상발령보고, 상황 전파 o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o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o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
행정안전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원안위가 백색단계에서 준비요청
지방자치단체	o 예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상황실, 연합정보센터) 발족.운영 o 비상상황 파악, 관계기관 통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o 소내 비상대응시설 운영(연구원 :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 확대 방지 및 원인 조사 o 시설 내외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 o 전문가단 현장 파견 o 환경방사능감시 활동 강화 o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운영 확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핵물질의 운반에 대한 방호조치 강화
한국원자력 의학원	o 예비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준비

2 청색비상

가. 상황

»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 냉각재 누설사고로 작업종사자의 급성 방사선장해(1 Gy 이상 피폭) 발생(청색비상 발령조건 이상)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 세부 내용

-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발전소 0호기
- 사고개요 : 00 원전 0호기 고장 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 기술
- 원자력사업자의 대응활동 현황
- 기타 : 특이사항

나.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 고
상황접수 및 보고	o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원안위 → 식약처)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요청 o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o 위해예방정책과
대응조치	o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원안위원장) 회의 개최 시 참석 o 상황점검회의 개최 - 청색비상 통보 및 비상대응활동 지시 접수 시 즉시 일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반) 파견자 검토 - 유통단계 수거·검사 범위 및 검사체계 점검 - 부서별 조치사항 검토 및 일일상황보고 o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o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o 처장 o 위해예방정책과 o 관련부서 o 위해정보과 o 관련 부서

다. 조치 내용

① 위해예방정책과

○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방사선비상(청색)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을 유선 또는 문서로 접수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사항' 및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등 주요정보를 관련 부서장에게 신속 공유

* 인트라넷 START → 공지 → 글쓰기 → 내용입력 → 저장

※ 원전 고장 일시, 장소, 원인, 우리 처 조치사항 등

- 처·차장에게 원안위 동향 및 식약처 부서별 조치 현황 등 일일상황 보고

○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

- 위해정보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지방청 등 사업부서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일일 점검

○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 관계부처 비상연락망 점검 및 부처별 대응 현황 파악
- 식약처 조치사항 및 협조사항(식약처 사무관급 1명 파견 등) 파악·보고

유관 기관	담당 부서	연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재환경과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해양환경정책과	02-397-7359 044-201-2283 044-200-5287

② 위해정보과

○ 원안위 등에 원전고장 관련 정보 확인

- 원전고장에 대한 조치현황 및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등 확인

○ 언론보도 동향 파악 및 인터넷 기사 등 지속 모니터링

○ 원전고장 관련 정보 및 언론 동향 등을 처·차장에게 보고

③ 식품기준기획관(유해물질기준과)

○ 적용 기준 및 시험법 확인·공개

<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

방사성 핵종		육류,어류,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1군	^{134}Cs, ^{137}Cs, ^{103}Ru, ^{106}Ru, ^{89}Sr	2,000	1,000	200	100
2군	^{131}I, ^{90}Sr	1,000	500	100	10
3군	^{235}U, ^{238}U	100	100	20	10
4군	^{241}Am, ^{238}Pu, ^{239}Pu, ^{240}Pu, ^{242}Pu	10	10	10	1
5군	^{3}H			100 kBq/L	

※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적용 기준 및 시험법을 식약처 모든 부서,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민간시험검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④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 고장발생 원전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의 재배·양식 현황 파악

- 재배지·양식장 위치, 재배·양식 품목 현황 등을 확인

※ 해당지역 관할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확인

○ 수거 대비 준비사항 파악

- 수거증, 검사의뢰서 및 인수인계서, 현장 비상연락망(부록 참조)
- 수거봉투 및 봉인지
- 수거량 : 매 건당 1 kg 이상 검체 채취(식품공전 참조)
-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에 수거내역 입력
- 시험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LIMS에 입력 관리
- 수거식별 깃발, 농작물 채취기구(낫, 호미, 칼 등), 사진기
- 개인보호 장비(실험복,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 및 구급약품 등
- 관련 시험법 및 보유 시험장비 등 수거검사 인프라 확인·확보 (시험검사정책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협의)

○ 원전 고장발생 인근지역의 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 현황 파악

- 사육 가축 종류·두수 및 도축장,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수, 위치, 품목 등 현황 파악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을 활용, 필요 시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에 확인

⑤ 식품관리총괄과 및 식중독예방과

○ 원전 고장발생 인근지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 위치, 품목 및 집단급식소 수, 위치, 급식인원, 지하수 사용 여부 등 현황 파악

※ 식의약행정시스템(행정망, http://neoportal.mfds.go.kr)의 인허가 대장 활용, 필요시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에 확인

⑥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등

- 원전 고장 관련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기자회견 등 원안위(연합정보센터)에서 언론대응 일원화

⑦ 소통협력TF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산・학・관) 운영 검토

⑧ 시험검사정책과

○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시험장비 현황 파악

- 지방청,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지정 민간검사기관 등

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과, 오염물질과 등)

○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 국내·외 연구논문 및 외국 정부기관 문서 등 자료 검색 및 확인

○ 식품 중 방사능 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법 검토(유해물질기준과 협의)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년)로 인한 수입식품 검사 시험법 등 준용

⑩ 지방청

○ 원전고장 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현황 파악 협조

- 현황 파악 결과를 본부(위해예방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에 즉시 보고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방향 제시 o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o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상황 대응 총괄 조정 및 현장 대응활동 지휘·통제 o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o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및 재난방송 협조 요청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건의 검토·결정
유관기관 (공통)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당지역 군부대·경찰청·교육청·기상청·해경서·소방서,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사업자 등 * 단, 현장지휘센터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실무반 신축 편성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o 원자력 연구기관 인력·장비 활용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교육부 (교육청 포함)	o 구호시설(학교) 지정·운영 관련 협조·지원 o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지원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군부대 포함)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행정안전부	o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구 분	내 용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o 지자체 방사선비상 경보방송 지원 (비상경보방송시설・민방위방송 활용) o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전송지원(원안위 요청시)
문화체육관광부	o 언론 대응활동 지원 o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산업통상자원부	o 원전시설 복구 지원(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국전력 협조·지원 포함) o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오염 검사 관리 준비
보건복지부	o 필요 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환경부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
국토교통부	o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 관련사항 지원 o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o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 통제 준비
해양수산부	o 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식품의약품안전처	o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경찰청	o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o 교통·출입통제 준비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기상청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준비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항공기 등) 준비
해양경찰청	o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 운항 통제 준비 o 해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준비
소방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원 준비
지방자치단체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운영 o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검토·건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o 사고확대방지,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원전의 경우) o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o 환경방사능 감시 지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상황에 따라 핵물질 운반제한 유도
한국원자력의학원	o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3 적색비상

가. 상황

»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에 중대한 노심손상이 발생하고 방사능누출로 종사자가 치사량(5 Gy)이상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 세부 내용

-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 발전소(지역 이름)
- 피해 : 피해 내용 기술
- 방사능 누출정보
  - 누출 핵종 및 누출량 : 0000
  - 확산 예상지역 및 거리 : 0000
  - 금후 누출 예상량 : 0000

» 기 타

- 기상 상태 : 0000
- 기술적 내용 : 0000
- 언론보도 내용 : 0000

나.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 고
상황접수 및 보고	o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원안위 → 식약처)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요청 o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o 위해예방정책과
대응조치	o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 원안위원장) 회의 개최 시 참석 o 긴급대응회의 개최 -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반) 파견자 검토 - 부서별 조치사항 검토 및 일일상황보고 o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o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o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o 처장 o 위해예방정책과 o 관련 부서 o 위해정보과 o 관련 부서

다. 조치 내용

■ 긴급대응회의 개최

○ 회의 개최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적색비상 통보 및 비상대응활동 지시 접수 시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처·차장에게 건의

* 필요한 경우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긴급대응회의 개최여부 결정

○ 참석대상

- 차장(주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기획조정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위해평가부장
- 위해예방정책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식품관리총괄과장, 식품기준과장, 유해물질기준과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위해정보과장, 소통협력TF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비상안전담당관 등

○ 논의사항

- 상황점검회의 결과 공유 및 식약처 대응방침 결정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검토
  · 총괄대응반장 지명 및 각 반/팀의 역할 검토·부여 등
-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식약처 파견자 검토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팀별 세부 조치사항

① 상황관리반

○ 지원본부 내 관련 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 팀 간의 업무조정 역할 및 팀별 조치내역을 매일 진행사항 점검 등 총괄 상황관리

○ 원안위와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 원안위에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현황 및 결과 등 상황보고(매일 오전 9시, 유선 또는 이메일 보고)

  * 당일 상황보고 내용은 사전에 처·차장에게 보고

- 원안위에 식약처 사무관급 1명 파견(긴급대응회의에서 결정)

○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등 소통

- 방사능 오염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국민 보호조치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신속 제공·전파를 통해 국민 불안감 확산 차단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개최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이해 제고
- 언론과 접촉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미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과도한 국민 불안감 해소

○ 각 팀별 일일상황보고서 취합 작성 및 보고

- 조치결과, 주요부처·여론 동향 등을 처·차장에게 보고(오후 5시)

② 언론대응반

○ 언론 및 여론 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 주요 일간지, 인터넷 뉴스 등을 실시간 검색하여 특이사항 등을 처·차장에게 보고
- 식품 구입요령·섭취방법 등 방사능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③ 현장대응팀

○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판매 금지 시행

  * 원안위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재난 긴급대응조치구역에 대하여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금지 조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체(46개 기관, 120명) 가동

  · 사고발생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출하제한 요청(농식품부, 해수부)

- **(가공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사고발생 지역 농산물 등의 식품 원료 사용 금지
  - 시설·장비의 충분한 세척 등 위생관리 및 지하수 사용업체 대상 수질검사 철저 지시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하수 사용금지 조치
  - 방사능 오염 식품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 등을 발견 시 신속히 폐기하고 신고하도록 홍보
- **(집단급식소)** 사고발생 지역의 집단급식소 등에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등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에 대한 회수·압류·폐기 총괄

- **(사전답사팀 구성)** 사고현장의 농작물 등 피해상황 사전 파악
  - 원안위와 수거 지역·품목·인력의 현장 출입가능 여부 등 협의
  - '사전답사팀'(본부 5급 1인, 관할지방청 1인)은 피해현장 확인 및 농산물 등 방사능 오염 정도, 투입 필요인력, 피해지역 지형 등 기초자료를 현장대응팀장에게 보고
- **(수거·검사)** 현장대응팀장은 사전답사 내용 등 반영한 농산물 등 수거·검사 계획(안) 수립 및 총괄대응반장, 처·차장에게 보고
  -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식약처, 농식품부 및 지자체 인력으로 수거조 구성(예 : 3인 1조), 사전 집합교육(검체채취 방법, 주의사항등) 실시
  - 방사능 오염 통제 인접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해수부) 및 동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 필요 시 오염지역 유통 농·축·수산물 원산지 조사(농식품부, 해수부 협조)
  - 오염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다소비식품 위주)
  - 지하수 사용 시 방사능 오염 수준 검사
  -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압류·폐기 지시 통보

○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 본부 행정동 3층에 위치한 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일 수거·검사 현황 관리
- 사고현장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집단급식소 등 현황 파악 및 수거 인력 협조 요청,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요청 등 지방청 및 지자체의 지시사항 점검·관리

④ 검사대책팀

○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 방사능 오염식품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 시험검사기관별 보유 장비, 검사인력 등 고려하여 검사업무량 배정
  * 필요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검사기관도 활용
- 수거 검체의 검사 결과를 현장대응팀에 신속 통보여부 확인 등 시험검사기관 검사현황 관리

⑤ 위해평가팀

○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 검사결과에 대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위해평가 결과를 현장대응팀에 보고

○ 시험검사기관 대상 검사법 교육 등 기술지원

- '현장검사지원반'을 구성하여 지방청,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지정된 방사능물질 검사기관 등 순회 지원

⑥ 유통차단팀

○ 방사능 오염식품 유통확산 방지 및 차단 역할 수행

- 유통·판매 금지 시행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단속
  · (점검 대상) 제조·가공업체/ 집단급식소/ 농·수산물 재배·양식장/ 도축장/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

⑦ 의약품관리팀

○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 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 오염환자 수에 따른 방호약품 소요량 파악 등

○ 방사선 방호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 해외 도매상 또는 제조사에 신속공급 주문 등
- 식약처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온라인 홍보 등

⑧ 대외협력팀

○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업무

- 국내 제조·생산 식품의 수출 제한 등 통상마찰 해결 등

○ 관련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고시 등 법적근거 검토 및 법제업무 등 관련 지원

○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 콜센터 운영, 소비자(국민) 질의·상담응답(Q&A) 및 교육 등

⑨ 운영지원팀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업무지원 인력, 컴퓨터, 사무용품 등 지원

⑩ 지방청 및 지자체

○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 현황 파악

- 농・축・수산물 재배・생산 현황,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 통계자료를 현장대응팀에 보고

○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회수・압류・폐기 업무지원

- 수거 필요인력 지원, 방사능물질 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 현장대응팀에서 회수・압류・폐기 요청을 통보한 즉시 이행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관련 동향 확인·평가 및 부처별 대응방안 협의·조정 o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o 정부 대응활동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통제 o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o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o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선포기준 해당 시) ※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를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의 언론대응 활동 지원 o 필요시 중앙정부 차원의 언론 대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o 언론.홍보 적절성 지속 검토 및 유관부처와 협의 ※ 대국민 홍보, 오보 대응 등 o 언론대응 및 정확한 정보전파 등 대국민 정보제공 o 장기 상황 관리 방안 수립 o 방사능방호 관련 유관부처 기술지원 및 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o 현장방재 대응조직 총괄 o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조치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자문을 받아 주민보호조치 등 주요 의사결정 및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행 지시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지역 주민에 대한 즉시 소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지역 등에 대한 긴급주민보호조치 (대피, 소개,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식료품, 음료품, 농산물 반출 및 소비 통제 - 위험(경계)구역 설정 및 통행 제한 등 o 對언론 창구인 연합정보센터 운영 강화 - 보도자료 배포(언론책임자가 수행) - 정기상황 발표(연합정보센터장) ※ 사고상황의 변동 내용과 대응활동 내용 주기적 제공 -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구 분	내 용
기획재정부	o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o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교육부	o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 o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지원 o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등 o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o 국내 외국 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o 외국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창구 운영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o 주민 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장비 지원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행정안전부	o 지자체 관련부서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o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원 -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상황 전파 (재난온라인방송, 재난문자전송 등) - 피해수습 전문인력 파견(특수재난협력관실, 민간전문가 등) - 방사능 오염지역(지자체) 동향 및 오염수습상황 관리 o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이송 차량・선박・헬기 등 투입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물자 수급 등
문화체육관광부	o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지원 o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 대응활동 지원 o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o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o 전력 수급지원 o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o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o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원
환경부	o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o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먹는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국토교통부	o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o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o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피해 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등
해양수산부	o 항만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어항 및 수산시설보호 o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출하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o 피해 지역의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섭취제한 및 유통.소비 통제
경찰청	o 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주민보호조치 지원 및 주민통제 수행 - 주변지역에 대한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활동 . 주민소개 지역에서의 재산보호 . 소개 지역내 출입 제한조치 - 대규모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동원 . 경찰은 주민의 소개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를 실시 . 이동경로 할당과 출발일정 조정 . 이동 중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처리
기상청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해양경찰청	o 사고지역 해역에 대한 어로 금지, 선박운항 통제 o 특수구조대(해양)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o 해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소방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특수구조대(119) 가동/ 인명 구조, 긴급 수송 o 방사성 오염 시설 제염/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원
광역단체 (시.도)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민방위대 동원령 선포 o 주민소개 범위·방법 설정 및 수송대책 강구

구 분	내 용
	o 오염지역 출입 통제를 위한 유관기관(군.경) 협조 요청 o 유관기관 긴급 구조.구난 협조요청 o 유관기관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협조요청 o 국토교통부・경찰 등 교통대책 협조요청 o 시.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광역 주민보호조치 필요시 광역 차원의 구호소 운영 및 관할 시.군.구 지원 o 장기 주민보호조치 계획 수립.시행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지원(광역지자체 소방본부) 등
기초단체 (시.군.구)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동원 민방위대원 임무 부여 o 주민소개 유도요원 배치 및 주민소개 조치 o 이재민 수용・구호 o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조치 o 긴급 구조.구난 활동(유관기관 합동) o 출입통제소 및 교통통제소 설치.운용 o 시.군구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지역대책본부에 피해접수 센터 설치 등 - 실종자 및 사상자 파악, 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사고 정보수집 - 운전상황 보고자료・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시스템 정보, 환경 방사선 감시 결과 o 사고 해석 - 사고원인, 사고정도・진행과정 예측 - 방사선 영향・환경 영향 o 평가 종합 - 방사성 물질 방출여부, 사고 수습대책 강구 - 시설의 위험도 평가 o 수습 및 안전대책 강구 o 방사선 관련 대국민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한국원자력의학원	o 사고 정보 수집 - 피폭환자 발생 예상 규모 등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 대응태세 유지 o 국민 심리안정화를 위한 상담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지속 가동 o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내 환경방사능 지속 감시 o 사고수습,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백색비상

■ 평상 시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에 관심·주의

구 분	조 치 사 항
위해예방정책과	○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 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시) 및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점검 ○ 원안위와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위해정보과	○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 관련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 적용 기준 및 시험법 확인·공개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농·축·수산물 생산 현황 파악 ○ 검체 채취 장비 현황 검토
식품관리총괄과	○ 식품 제조·가공 업체 현황 파악
식중독예방과	○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소통협력TF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시험검사정책과	○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평가원	○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농·축·수산물 재배 현황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 현황 파악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현황 정보 수집 및 보고

2 청색비상

■ 유통 중인 식품(농·축·수산물 포함)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구 분	조 치 사 항
위해예방정책과	o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o 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 시) 및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점검 o 원안위와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위해정보과	o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o 관련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o 적용 기준 및 시험법 확인·공개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o 농·축·수산물 생산 현황 파악 o 검체 채취 장비 현황 검토
식품관리총괄과	o 식품 제조·가공 업체 현황 파악
식중독예방과	o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대변인실	o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소통협력TF	o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시험검사정책과	o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평가원	o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o 시험법 검토
지방청	o 농·축·수산물 재배 현황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 현황 파악 협조 o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현황 정보 수집 및 보고

3 적색비상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에서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응

구 분		조치 사항
위해예방정책과		o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o 긴급대응회의 개최 및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상황관리반		o 지원본부 내 관련 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o 원안위와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o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o 각 팀별 일일상황보고서 취합 작성 및 보고
언론대응반		o 언론 및 여론 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총괄대응반	현장대응팀	o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행 o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에 대한 회수·압류·폐기 총괄 o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검사대책팀	o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위해평가팀	o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o 시험검사기관 대상 검사법 교육 등 기술지원
	유통차단팀	o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점검
	의약품관리팀	o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 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o 방사선 방호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대외협력팀	o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 업무 o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o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운영지원팀	o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
지방청 및 지자체		o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 현황 파악 o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회수·압류·폐기 업무 지원

Ⅵ.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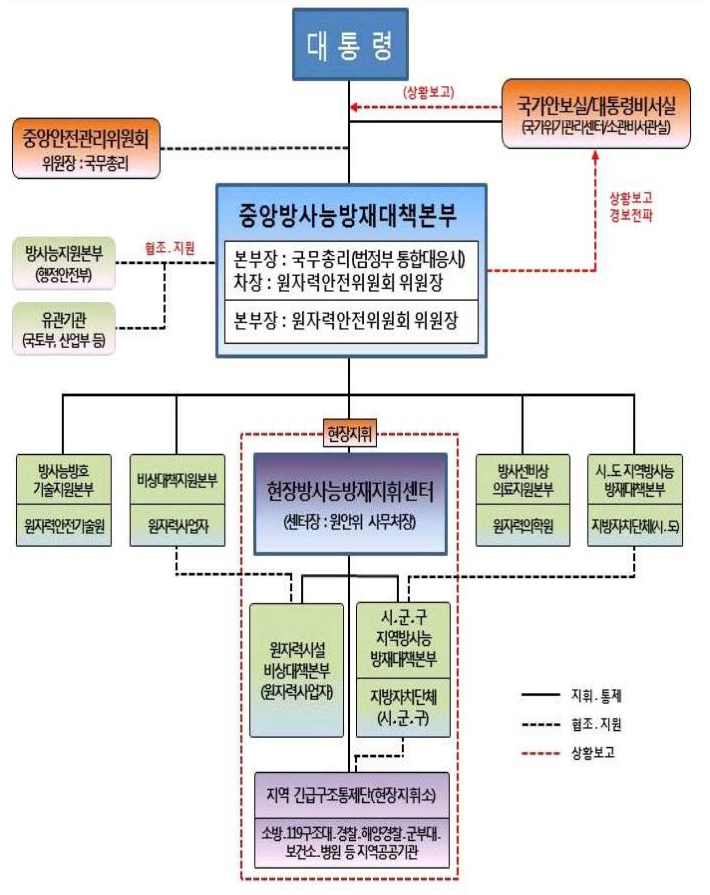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 원전안전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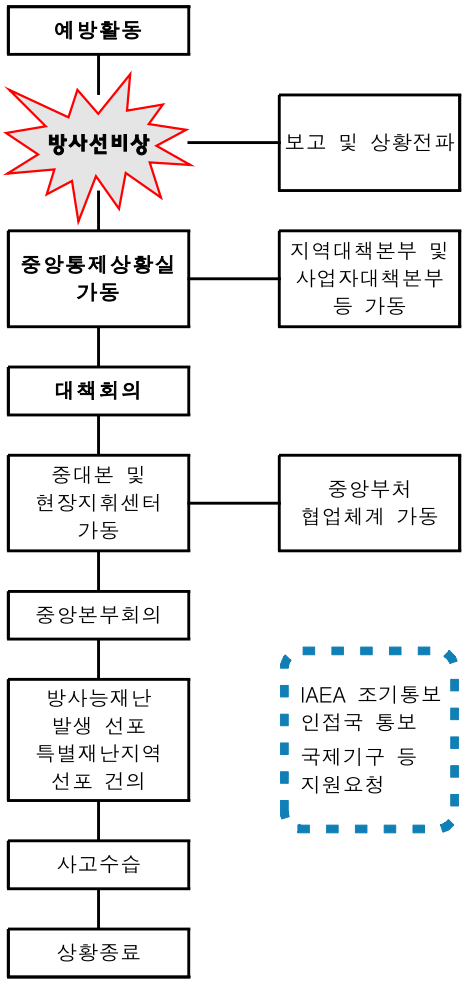
관련 매뉴얼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전안전 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Ⅰ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대응 표준절차도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5조제1항 및 제26조

Ⅱ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재난대응 프로세스

구 분		청색 비상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초기대응
초기 대응 부서	위해정보과		**위해정보 수집·분석** ●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필요시 상황점검회의 개최 요청	● 원안위 등에 원전고장 관련 정보 확인 * 원전고장에 대한 조치현황 및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등 확인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위해예방정책과		**상황접수 및 보고** ● 원안위로부터 비상 발령 확인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 SMS)를 통해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등 신속 공유 ● (필요 시)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과장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처·차장 ● 원안위와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 초기정보 확인 및 추가상황 파악 ● 긴급대응회의 준비 및 소집 * 참석범위 등 조정 ● 원안위 동향 및 부서별 조치현황 등 일일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처장·차장			● 초기 추진상황 확인 - 상황판단회의 결과 확인 - 초기 대응상황 파악	**긴급대응회의 주재** ● 차장(필요 시 처장) 주재 ● 위기수준 고려하여 대응방향 결정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결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상황점검회의 주재** ●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조치방안 검토 ● 대국민 홍보방법 및 시기 검토(원안위 협의) ● 관련기관 보고·협조 ● 원안위 요청 시 파견자 검토(사무관 1인)	● 긴급대응회의 결과에 따라 일일상황 보고체계 구축 지시 ● 처·차장에게 원안위 동향 및 부서별 조치현황 등 일일상황 보고
관련부서			●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농·수·축산물 생산현황 파악, 검체채취 장비현황 등 검토 ● **(식품관리총괄과)**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황 파악 ● **(식중독예방과)**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 **(소통협력TF)**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 **(대변인실)**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 **(평가원)**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및 시험법 검토	●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농수축산물 생산현황 파악, 검체채취 장비현황 등 검토 ● **(식품관리총괄과)**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황 파악 ● **(식중독예방과)**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 **(소통협력TF)**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 **(대변인실)**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 **(평가원)**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및 시험법 검토 ● **(지방청)** 농축수산물 재배현황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 현황 파악 협조, 지자체 대응현황 정보수집·보고

적색 비상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운영

- 원안위 등에 원전사고 관련 정보 확인
-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상황, 주요 대응조치,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 요청 등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 일일상황보고체계 구축
  - 위기 종결 시까지 '일일 지원본부 회의' 개최
  -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각 팀별 당일 16:00까지 작성)
  * 당일 조치사항, 주요 부처·여론·제외국 등 동향, 향후 조치계획
- 청와대·국조실·국회 업무보고 및 대응
- 처·차장 지시사항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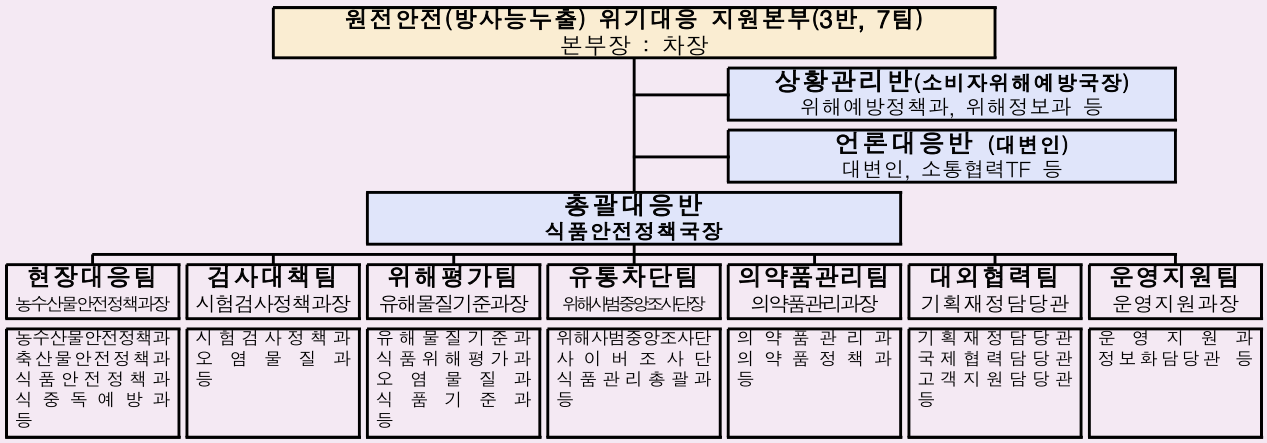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총괄·지휘

- 본부장 : 차장(필요 시 처장)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회의 주재
  - 일일상황보고 내용 확인, 조치사항 검토
- 관련 부처간 협조 요청

수습복구

- **국민 안심 차원의 이미지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소비자포럼, 세미나 등 개최
  - 외부 전문가 활용한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여론형성 주도
  - 내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가동
  - 사후 심포지엄 개최 및 결과 홍보
- **위기대응능력 향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연구 활성화 지원**
- **사고상황 분석 및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위기대응 매뉴얼 수정·보완
- **위기상황 종료 후 백서 발간**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 **(상황관리반)**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대국민 소통메시지 마련·전파
- **(언론대응반)** 언론 및 여론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 **(현장대응팀)**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행, 수거·검사 및 회수·압류·폐기 총괄
- **(검사대책팀)**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 **(위해평가팀)**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시험검사기관 대상 검사법 교육 등 기술지원
- **(유통차단팀)**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이행여부 점검
- **(의약품관리팀)**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 **(대외협력팀)**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업무, 관련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 **(운영지원팀)** 위기대응 지원업무 총괄, 시설·인력·물자 지원
- **(지방청·지자체)**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현황 확인,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 회수·압류·폐기 지원

Ⅲ 관련 부서·부처별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피해자 등 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주관부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계부처	행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복지부, 행안부 등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주요 업무	<재난 사고수습활동 총괄 조정> ◦ 중앙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발족·운영 ◦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학생 등 주민보호조치 권고 ◦ 언론사 인터뷰, 기자회견 등 언론대응 총괄,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 사고지역 비상의료 지원단 구성·운영 ◦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 대책 강구·시행	<주민보호조치 지원 등>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 ◦ 피해 예상범위 확대에 따른 구호소, 이재민 지원센터 등 추가 지정 협의 ◦ 현장상황정보 수집을 통한 주민보호 긴급조치 필요성 검토 ◦ 현장의료센터를 통한 환자 의료대응	<재난현장 사고대응기관 간 비상정보통신체계 운영> ◦ 재난상황정보시스템 정상가동 점검 ◦ 방재유관기관간 영상회의 시설 점검 및 이동형 설비 지원 ◦ 헬기, 차량 등을 이용 사고지역 비상통신망 긴급지원 요청

기능	⑦ 교통대책	⑧ 의료 서비스	⑨ 사고현장 수습	⑩ 자원봉사관리
주관부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연계부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경청, 국방부 등	복지부, 국방부 등	국방부 등	행안부 등
주요 업무	<재난발생지역 교통대책> ◦ 사고수습 인력·장비 및 재난지역 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선박 지원 ◦ 주변 도로·해상·공중에 대한 교통 소통 지원 및 통제	<방사능피폭 의료 지원 등>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응급처치 및 이송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및 응급의료자원 지원 ◦ 이재민 심리안정화 및 생활안정화 대책 강구	<재난지역 제염조치 등 > ◦ 재난지역 피해조사 및 특성 등 확인 ◦ 재난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및 장비 동원 ◦ 재난복구지역 설정 및 피해 예상지역 주민 출입제한, 교통통제 조치 시행	<자원봉사자 관리 등>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④ 시설응급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소방청, 국방부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비상연락망 자체 점검 ◦ 사고영향 평가를 통한 사고진행상황 예측 분석작업 ◦ 시설 필수안전기능 확보에 필요한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 복구활동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요청(지자체 및 지역사단, 국토부 등 관련부서) ◦ 사고수습에 필요한 비상조직 가동 및 필수요원 확보(필수요원 외 종사자는 사고위험 외부구역으로 대피조치) ◦ 사고현장 수습을 위한 민·관·군 선박 동원, 장비·인력 배분 총괄 조정 ◦ 구조헬기, 차량 등 지원

⑪ 사회질서유지	⑫ 수색,구조.구급	⑬ 재난수습홍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경찰청 등	소방청, 해경청, 국방부 등	문체부, 방통위 등
<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차량통제, 현장 치안예방 활동 ◦ 사상자 긴급 후송차량 이동지원	**<구조·구급 활동 등>** ◦ 소개지역 잔류인원 수색·구조·구급 ◦ 사고지역 선박 운항 통제 및 항행경보방송 등 안전조치 ◦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파악 및 응급조치 협력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언론기관 보도문 작성 및 기자회견 ◦ 사고상황 및 주민행동요령 보도자료 수시 배포 ◦ 24시간 상담창구 등 대국민 언론대응 창구 운영 및 유언비어 확산 방지 ※ 의학원, 전문기관 등 전문기관의 실시간 민원대응창구 운영 ◦ 언론 인터뷰·취재 및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언론대응전문팀 및 단일 창구를 통해 전담, 정보혼선 방지

Ⅳ 관계기관 주요 임무(국내원전 방사능누출)

부 처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 지휘센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시	중대본 운영 • 현장지휘센터 방사선 청색•적색비상 발령 시	수습·복구단계
원자력안전위원회	▪ 비상발령보고 및 상황 전파, 대책회의 개최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 • 운영 ▪ 유관기관 초기 비상 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 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 비상상황 대응 총괄 조정, 현장 대응활동 지휘▪통제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연합정보센터 운영 언론대응 일원화,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 요청 ▪ 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소개 • 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육 • 해 •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 ▪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정보제공 재난홈페이지 개설 ▪ 장기 상황 관리방안 수립 등	▪ 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 합동조사위원회 설치 ▪ 방사능재난 상황 조사 ▪ 재난조사, 피해보상대책, 국가 차원의 방사능재난 사후대책 보고 ▪ 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요청 (필요시) ▪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 내 복구 완료시 수습 및 복구완료 선언 ▪ 지자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를 결정 ▪ 주민복귀를 위한 상황정보 수집 및 평가
국가안보실	▪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가동	▪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후속 대응반 운영
대통령비서실	▪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후속대응 및 복구	▪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후속대응 및 복구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 방사능지원본부 운영 (필요시) ▪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지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 파견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피해지역 인력, 장비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 방사능 오염피해 공동조사 참여

국방부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 및 장비 지원 ▪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교육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구호시설(학교) 지정 및 운영 관련 협조·지원 ▪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보건복지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현장 응급의료 지원 (필요시) ▪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주민 심리 개입 ▪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안정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원전 사고시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분석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 원자력연구기관 운영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관리 준비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오염에 관한 통제	
해양수산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항만 방사능오염 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 어항 및 수산시설 보호 ▪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검사 및 출하 제한	

환경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검사 준비 ▪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검사 실시	
국토교통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통제 준비 ▪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 피해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실시	
산업통상 자원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원전시설 복구 지원 (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전 지원 포함) ▪ 전력 수급 지원 ▪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언론대응 활동 ▪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지원 ▪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대응활동 지원	
외교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 교환 ▪ 국내 외국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 외국의 지원협조에 대한 정부대응창구 운영	
기획재정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 예산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피해지역의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및 출하 제한	

경찰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특이상황 감시 및 치안 유지 ▪ 주민소개시 교통통제 및 방사능오염지역 출입통제 실시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기상청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 공중방사능 탐사 지원 (항공기 등)	
해양경찰청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운항 통제 ▪ 해양방사능 탐사 지원 (경비정 등)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 특수구조대(해경)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등	
소방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공중방사능 탐사 헬기지원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지방자치단체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 비상상황 접수 및 관계기관 통보 ▪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운영 ▪ 주민보호조치 준비 점검 및 시행(수송수단 확보, 대피・소개,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 유관기관 협조 요청 (주민소개시 교통통제, 오염지역 출입통제, 긴급 구조구난,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 이재민 수용 및 구호, 피해접수센터 운영	▪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중장기 피해복구계획 수립 (시행계획, 실시계획) ▪ 주민복귀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 ▪ 사후대책 수립

Ⅴ 비상연락망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 장	043-719-1701
위해예방정책과	과 장	043-719-1711
	사무관	043-719-1718
	주무관	043-719-1723

□ 관련 기관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02-770-4887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044-200-2224, 2274	044-200-22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5, 7359	02-397-7362
	원자력안전과		02-397-7287, 7288	02-397-7292
	월성현장방재센터		054-740-3605,3627 (야)054-740-3653~4	054-740-3610
	영광현장방재센터		061-350-3605,3627 (야)061-350-3653~4	061-350-3610
	울진현장방재센터		054-780-3605,3627 (야)054-780-3653~4	054-780-3610
	고리현장방재센터		051-720-3605,3607,3627 (야)051-720-3653	051-720-3610
	대전현장방재센터		042-612-3605~7 (야)042-612-3605	042-612-3610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14	02-2110-0135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08	02-2110-0136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		044-215-2685	044-215-80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044-202-4656	044-202-6023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2-4384	044-202-6015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6893	044-203-6971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		02-2100-8437	02-2100-8498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8	02-748-5778
	합참화생방과 지휘통제실(야)		02-748-3284 02-748-0305, 3180, 3183	02-796-7985 02-748-579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02-2008-6119, 0300	02-3412-8064
행정안전부	상황근무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상황담당관실 (사회재난)	044-205-1541	044-205-8894
	상황담당관실 (자연재난팀장)	044-205-1542	044-205-8890
	상황담당관실 (자연재난팀원)	044-205-1543	
	환경재난대응과	044-205-6176, 78	044-205-8947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0, 91	044-203-3458
	소통정책과	044-203-2920	044-203-3483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2, 73	044-863-9219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8	044-203-4768
	종합상황실	044-203-4002~5	044-203-4790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주간) 당직실(야간)	044-202-2651, 52 044-202-2118	044-202-3989 044-202-3985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6, 7115	044-201-713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7	02-2100-6480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86, 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92	044-200-5299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02-3150-2856	02-3150-3657
	치안상황실(야)	02-3150-1234	02-3150-3657, 58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0502	02-847-4419
	국가기상센터	02-2181-0674~5	02-836-6755
해양경찰청	경비과	032-835-2741	032-835-2941
소방청	119구조과(주간) 119종합상황실(야간)	044-205-7621 044-205-1(~6)119	044-205-8986 044-205-8877
경찰서		112	
소방서		119	
해경안전서		122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안전팀)	051-888-3021~4	051-888-3019
부산 기장군	원전안전과	051-709-5471~4	051-709-5479
부산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051-749-4131∽5	051-749-4649
부산 금정구	도시안전과	051-519-4651∽4	051-519-4649
울산광역시	원자력산업안전과	052-229-6020~4	052-229-6019
울산 울주군	에너지정책과	052-204-1431~5	052-204-1419
울산 중구	안전총괄과	052-290-4052,4056	052-290-4069
울산 남구	안전총괄과	052-226-3510,3513	052-226-5268
울산 동구	안전총괄과	052-209-3671,3675	052-209-3669
울산 북구	안전정보과	052-241-7891,7895	052-241-7899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055-211-2872, 77	055-211-2859
경남 양산시	안전총괄과	055-392-2831,2834	055-392-2699
경상북도	원자력정책과	054-880-7661,7662	054-246-9056
경북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054-760-7990~1	054-760-7488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경북 포항시	안전관리과	054-270-3337,3339	054-270-3340
경북 울진군	안전원전과	054-789-5890,5891	054-789-6293
경북 봉화군	안전건설과	054-679-6491,6493	054-679-6479
강원도	비상기획과	033-249-3700,3029	033-249-2954
강원 삼척시	재난안전과	033-570-3895~7	033-570-3179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061-286-3050~3	061-286-4737
전남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731~3,5589	061-350-5122
전남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18,7016	061-390-7588
전남 함평군	안전건설과	061-320-1991,1994	061-320-3594
전남 무안군	안전총괄과	061-450-5816,5818	061-450-5133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063-280-2711~2	063-280-2389
전북 고창군	재난안전과	063-560-2659,2668	063-560-2679
전북 부안군	안전총괄과	063-580-4561~2	063-581-4288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042-270-4950,4953	042-270-4929
대전 유성구	재난안전과	042-611-2208,2935	042-611-2553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대표	042-868-0000	-
	상황실	042-861-4041	042-861-0971,4042
	당직실	042-868-0402	042-861-1700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대표	042-860-9700	042-860-9849
	물리적방호실	080-002-0049	042-860-9849
한국원자력 의학원 (방사선비상 진료센터)	대표	02-970-2114	-
	24시간 사고접수	02-3399-5959	02-3399-5830
	당직실	02-970-2121	02-970-2446
	의료지원본부 상황실	02-3399-5811~9	02-3399-5830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표	042-868-2000	
	원자력방재실	042-868-4548	042-868-2336
	당직실	042-868-8112	
한국 수력 원자력 (주) 본사	주간 대표전화	054-704-2114	054-704-5199
	주간 비상대책지원실	054-704-1140~78	054-704-1191~4
	주간 방재대책부	054-704-3330~5	054-704-3398
	야간 대표전화	054-704-2203	054-704-5695
한국 수력 원자력 (주) 발전소	고리원전 대표 당직실	051-726-2114 051-726-3203	-
	한빛원전 대표 당직실	061-357-2114 061-357-3203	-
	월성원전 대표 당직실	054-779-2114 054-779-3203	-
	한울원전 대표 당직실	054-785-2114 054-785-3203	-
	새울원전 대표 당직실	052-715-2114 052-715-3203	052-715-2999

Ⅶ. 부록

1 방사선비상 시 국민 행동요령

□ 정의

○ 방사선비상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비상명칭은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류	내용
백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필요 없음)
청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적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 방사능재난 :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 원자력시설 :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

□ 방사선비상 상황을 알리는 방법

○ 방사선 청색 또는 적색비상 발령 시, 경보방송망, 텔레비전, 라디오, 차량가두방송,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등을 통해 방사선비상 상황 알림

* 백색비상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보망 등을 통한 주민 상황통보는 없으며,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방사선비상 상황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기업 공공기관 학교	• 방사선 비상 시 각 기관 비상대응요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콘이나 환풍기 정지 • 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가정	<실내 대피 통보를 받은 경우> • 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 정지 •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음.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 손발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음 * 오염지역을 지나온 경우 입었던 옷과 신발은 비닐에 싸서 밀봉 • 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안전지역(구호소) 대피(소개) 통보를 받은 경우> • 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 준비물 :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폰(충전기), 평소 먹는 약 등 필수품 •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수도를 잠금 •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고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 가축이나 애완동물은 우리에 가둔 후 충분한 먹이를 줌 •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대피완료 표시(출입문에 흰수건) • 마을별로 지정된 집결지로 걸어서 이동(지자체 비상요원, 마을 이장 등의 안내에 따름) • 지자체 비상요원의 안내에 따라 제공차량 등으로 구호소로 이동 • 구호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재민 등록

□ 유의사항

○ 방사선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국민들에게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령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질서 있게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 같은 방사선비상 상황이라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은 청색비상이 발령되면 지자체의 별도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구호소에서는 이재민 등록을 통해 가족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므로 학교, 병원, 직장에 있는 가족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비상 시에는 통화량이 폭증하여 휴대전화 등이 불통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실내나 구호소에서 TV와 라디오를 시청하세요.

○ 구호소에서는 음식물과 잠자리,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됩니다.

○ 갑상선보호약품(KI)의 분배와 복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시합니다.(임의복용 금지)

□ 주민보호조치 시행방법 개요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청색비상(또는 적색비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 원자력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사업자경보망을 통해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 중심 반경 3~5km)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보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민방위 경보망, 가두방송, 직접방문, 이·통장을 통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통보하며,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TV·라디오 등으로 알려드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휴대폰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합니다.

○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됩니다.

- 방사능영향이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비상 상황인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방사성물질 방출 이전에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내의 주민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즉시 구호소로

소개하게 되며,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 중심 반경 20~30㎞)은 풍향, 풍속, 강수량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소개, 옥내대피 등 적절한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방출된 이후에는 환경감시결과를 반영하여 방사능영향이 미치기 전에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개를 지시하게 되면, 소개 대상 주민은 마을 주변 집결지에 집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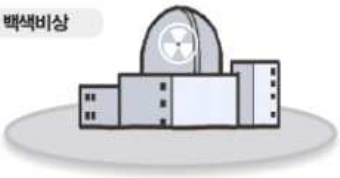
- 집결지는 통상 마을회관, 기차역,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마을 주민 누구나 알고 있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구호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방사능 구름)을 피해 2~7일 정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거나 즉시 갖출 수 있는 실내인 각 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호소의 선정, 물품 보급, 급식 방법 등 구호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 등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색·청색·적색비상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백색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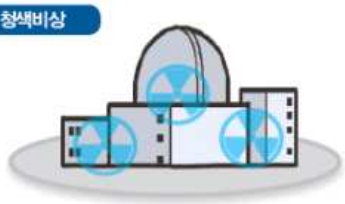


방사선 영향이 원자로건물 내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백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평상시와 같이 생활	•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 운영	•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공개

청색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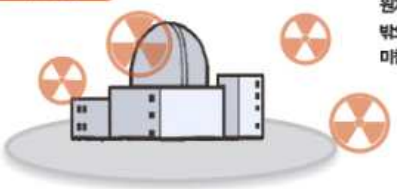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청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준비	•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발족 운영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발족 운영	• 주민보호조치 준비

적색비상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밖으로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

적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지자체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 주민보호조치 결정 • 원전 비상대응 및 사고 수습 통제	• 주민보호조치 실행

방사선비상 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백색비상일 경우 지자체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청색·적색 비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 사업자 | 사업자 경보망을 통해 상황 방송
| 지자체 | 민방위 경보망, 가두방송, 직접방문, 아·통장을 통한 전달, 전화
| 정 부 | 긴급재난방송(TV, 라디오 등) 및 긴급재난문자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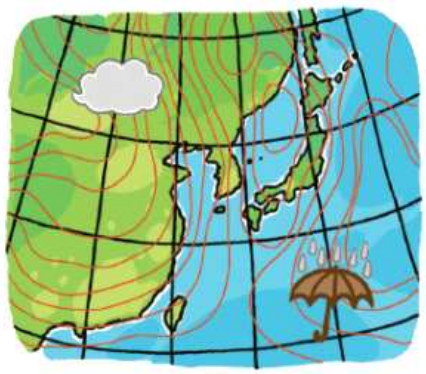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 지자체 | 민방위 경보망, 가두방송, 직접방문, 아·통장을 통한 전달, 전화
| 정 부 | 긴급재난방송(TV, 라디오 등) 및 긴급재난문자 전송

방사선비상 발생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경로는
바람의 방향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공식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①

방사능 오염을 막으려면,
외부 공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②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③

음식물과 잠자리, 식수 등
기본적인 생필품은 구호소에서 제공하므로,
평소 먹는 약품,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전화 등
개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만 챙깁니다.



대피 준비 ④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지낼 수 있도록
물과 먹이를 갖추어 주세요.



대피 안내를 받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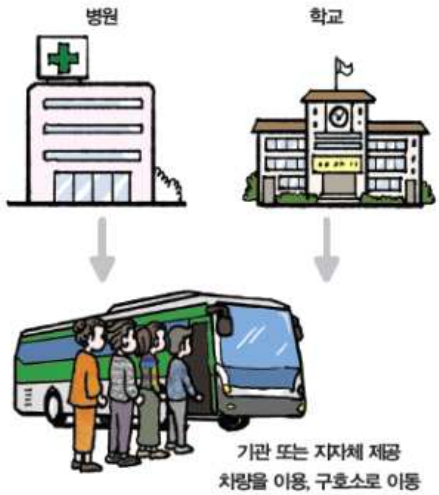
마을 주변 집결지로 이동한 후,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이용,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 1차 집결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부는 구호소에서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는 각 기관 또는
지자체 차량으로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구호소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리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부산	기장군	장안읍(일부), 일광면(일부)
울산	울주군	서생면(일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부산	기장군	장안읍(일부), 일광면(일부), 철마면, 정관읍, 기장읍
	해운대	송정동, 좌1~4동, 반송 1~2동, 반여3동, 반여 1, 2, 4동(일부), 중 1~2동(일부)
	금정구	금사동, 서3동(일부), 부곡 1~3동(일부), 구서 1동(일부), 구서 2동,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울산	울주군	서생면(일부),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삼동면(일부), 언양읍(일부), 범서읍(일부)
	남구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신정 1~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대현동, 수암동
	동구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 1·2동, 남목 1·2·3동
	중구	학성동, 반구 1·2동, 복산 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 1·2동, 약사동
	북구	염포동, 양정동, 효문동, 강동동(일부), 송정동(일부)
경남	양산시	동면,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월성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경북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경북	포항시	오천읍, 장기면
울산	중구	병영 1동, 병영 2동, 학성동, 반구 1동, 반구 2동, 복산 1동, 복산 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동구	남목 1동, 남목 2동, 남목 3동,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 1동, 전하 2동
	북구	농소 1동, 농소 2동, 농소 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남구	신정 1동, 신정 2동, 신정 3동, 신정 4동, 신정 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울주군	범서읍, 언양읍, 두동면

한빛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부)
전북	고창군	상하면 (일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부), 영광읍, 백수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군서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무안군	해제면
	장성군	삼서면, 황룡면, 삼계면
	함평군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상하면(일부), 흥덕면, 공음면, 해리면, 신림면, 부안면
	부안군	진서면, 보안면, 변산면, 위도면, 줄포면

한울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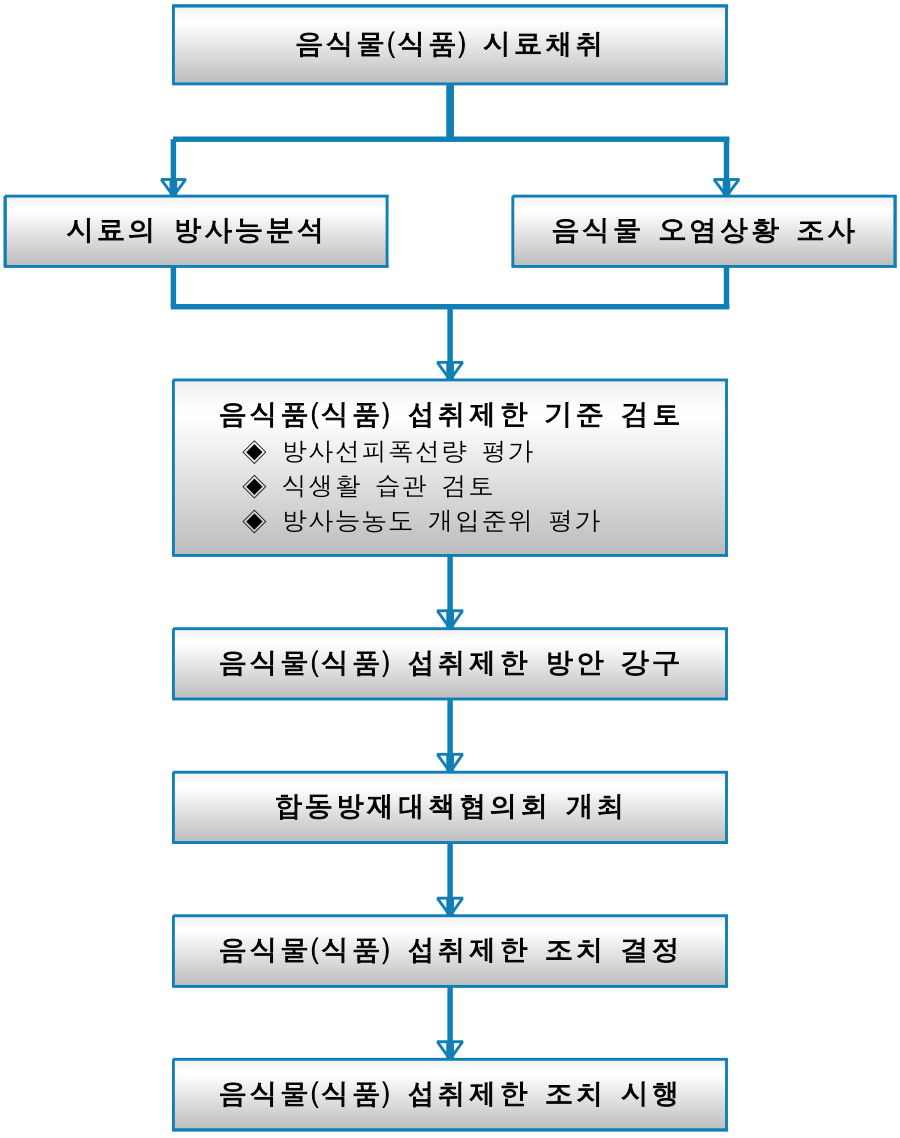
경북	울진군	북면(일부), 죽변면(일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경북	울진군	북면(일부), 죽변면(일부), 울진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가성면
	봉화군	석포면
강원	삼척시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2 주민보호 및 구호조치

1 음식물(식품) 섭취 제한



1 음식물(식품) 오염상황 조사

- 합동방사선감시센터는 음식물 시료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실시하여, 음식물 오염상황을 조사
- 방사능농도 분석결과로부터 주민이 음식물섭취로 인하여 받는 방사선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령 상의 기준과 비교
- 방사선피폭선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요 음식물섭취 경로별로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운영개입준위를 재평가
-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방안들을 조합하여 운영개입준위를 평가하고 적절한 음식물섭취제한 방안을 강구

2 음식물(식품) 섭취제한 조치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음식물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조사하여 방사능오염을 확인하고, 합동방사능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를 결정
- 방사능오염 확산 및 음식물섭취 제한 방안
  - 오염된 음식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 오염된 음식물을 가공 처리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
  - 가축사료로 공급하는 방법
  - 폐기처분
-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제한조치
  - 오염된 식품은 폐기처분
  - 오염된 식품과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을 방지
  - 오염정도가 낮거나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감쇄 또는 처리 후 사용
  -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

■ 오염된 음료수의 처리방법

- 허용치 이상으로 오염된 식수원은 사용 봉쇄 조치
- 오염 정도가 낮거나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감쇄 또는 처리 후 사용

■ 오염된 우유의 처리방법

- 오염지역에 방목된 젖소의 우유는 잔존 방사능농도에 따라서 적당한 처리과정을 거쳐 치즈 등 가공식품으로 처리하여 보관 또는 폐기

■ 오염된 농축산물 및 가축사료

-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식품, 가축사료는 일시 저장 후에 사용
- 장반감기 핵종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폐기
- 목초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오염되지 않은 사료를 공급

■ 지역본부장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체 음식물 확보 및 비상급수 공급체계 등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운영

■ 음식물의 섭취제한 기준

방사성 핵종		육류,어류,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1군	^{134}Cs, ^{137}Cs, ^{103}Ru, ^{106}Ru, ^{89}Sr	2,000	1,000	200	100
2군	^{131}I, ^{90}Sr	1,000	500	100	10
3군	^{235}U, ^{238}U	100	100	20	10
4군	^{241}Am, ^{238}Pu, ^{239}Pu, ^{240}Pu, ^{242}Pu	10	10	10	1
5군	^{3}H			100 kBq/L	

※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방사능 오염물질 폐기물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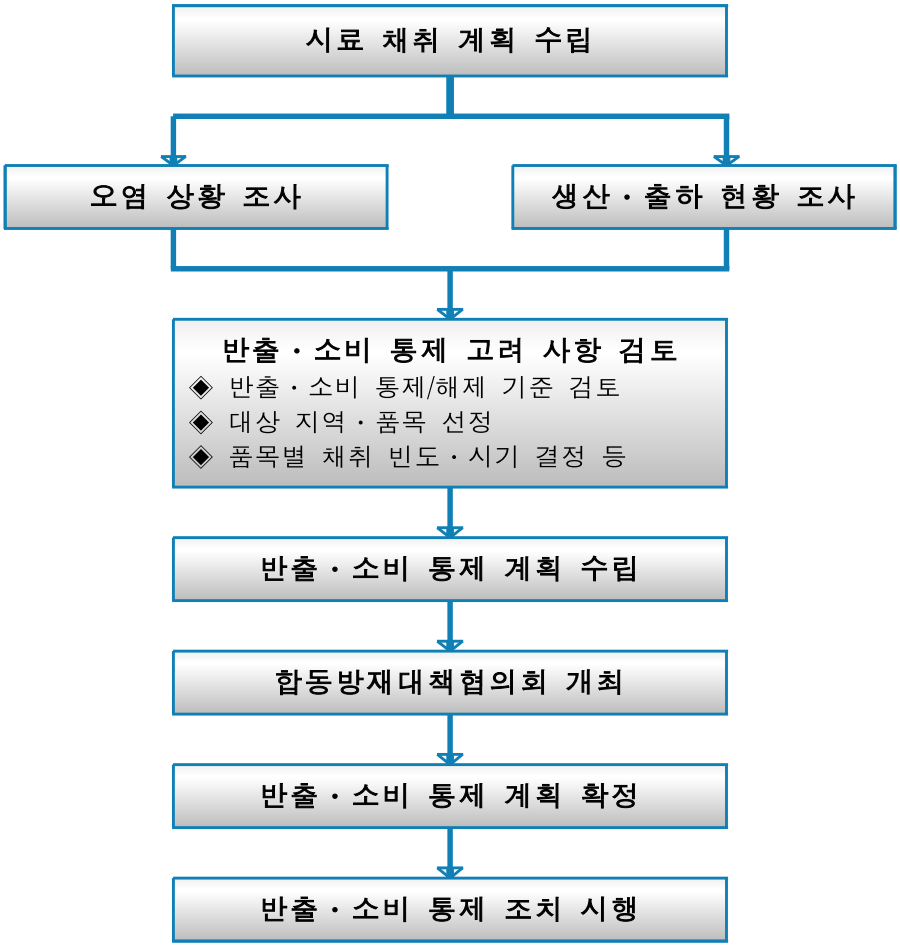
■ 기체 및 액체 폐기물은 필터 등을 통해 여과하여 처리하고, 고체 폐기물은 방사능(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분

< 방사능 폐기물 처분 방식 >

분 류		정 의	처분 가능
심층		지하 깊은곳에 천연 또는 공학적 방벽	모든 준위
천층	동굴	지하 동굴 또는 암반에 천연 또는 공학적 방벽	중·저·극저 준위
	표층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 및 공학적 방벽	저·극저 준위
	매립형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	극저 준위

* 방사능 폐기물 분류(Bq/kg, 세슘기준) : 극저준위($100<x<10^4$), 저준위($10^4<x<1.1\times10^9$), 중준위($>1.1\times10^9$)

2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 방사선평가반은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환경탐사 결과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오염 정도를 예측하고 오염 검사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을 선정
- 검사 대상 지역은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 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되 토양 중의 방사성 세슘 및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 환경감시 결과를 감안하여 선정
- 검사 빈도 및 품목의 선정시에는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의 반감기, 품목별 오염 경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검사 빈도는 품목의 생산·출하 현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대표 품목을 설정하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품목에 대해 재검사를 추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오염검사 결과 반출·소비 통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합동방사능방재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반출·소비 통제 조치를 시행. 다만, 오염검사 결과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시료 채취 빈도 등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섭취제한 및 소비·통제 조치를 지시

■ 지역본부장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 또는 소비 통제를 실시

■ 식료품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오염된 식료품은 폐기
- 오염된 식료품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
- 오염되지 않은 식료품과의 혼합을 방지

■ 음료품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오염된 식수원은 봉쇄 조치

■ 오염지역에서 방목 또는 오염된 사료를 사용한 젖소에서 생산된 우연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치즈 등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여 보관 후 재검사
-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

■ 농·축산물 및 가축 사료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농·축산물은 일시 저장하고 재검사
-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폐기

■ 반출 또는 소비 통제 기준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 기준 적용

핵 종	대상식품	기 준 (Bq/kg, L)
^{131}I	모든식품	100 이하
^{134}Cs + ^{137}C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기타식품*	100 이하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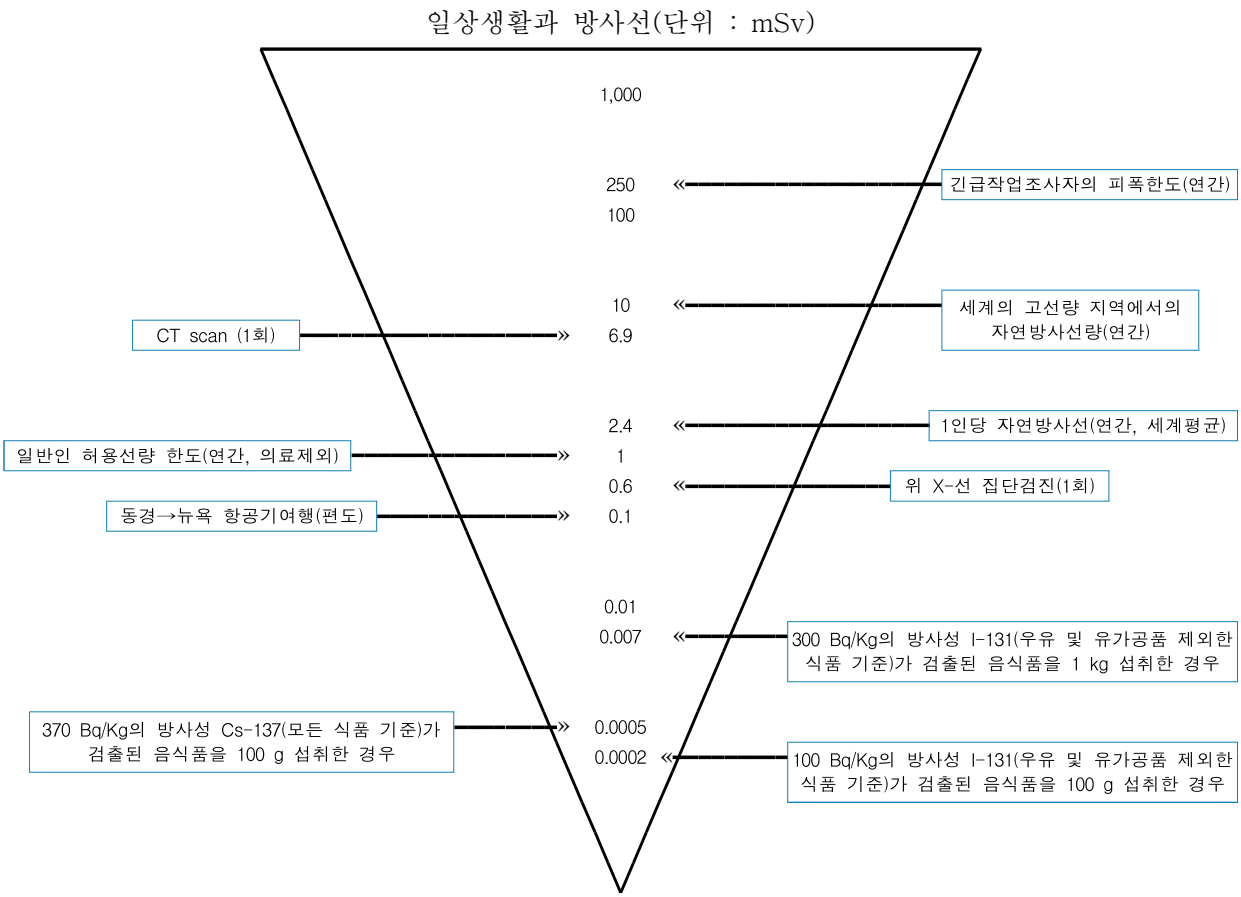
- 그 외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 적용

방사성 핵종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1군	^{103}Ru, ^{106}Ru, ^{89}Sr	1,000	200	100	2,000
2군	^{90}Sr	500	100	10	1,000
3군	^{235}U, ^{238}U	100	20	10	100
4군	^{241}Am, ^{238}Pu, ^{239}Pu, ^{240}Pu, ^{242}Pu	10	10	1	10
5군	^{3}H	100 kBq/L			

※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3 방사능에 대한 Q&A (예시)

1. 일상생활에서의 방사능 노출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 세슘이 370 Bq/kg 오염된 식품을 1 kg 섭취할 때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약 0.0048 mSv이며, X-선 진단검진(1회)을 받는 영향의 1/125 수준

○ 연간 섭취하는 총 식품 578 kg(국민건강통계, 2014년)이 370 Bq/kg으로 오염된 경우에 받는 방사선량은 약 2.77 mSv로 1회 CT촬영(6.9 mSV) 보다 낮은 수준임

2. 방사능(방사성) 물질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은?

○ “방사능 (핵종)물질(放射能物質)” 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원자핵으로 우라늄(^{235}U)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에 대하여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특 성	핵 종	반 감 기
α선 방출	^{235}U	7×10^{8}년
	^{238}Pu	87.7년
	^{239}Pu	2.4×10^{4}년
	^{240}Pu	6,540년
	^{241}Am	432년
β선 방출	^{3}H	12.4년
	^{14}C	5,730년
	^{35}S	87.3일
	^{89}Sr	50.5일
	^{90}Sr	29.1년
	^{99}Tc	2.1×10^{5}년
	^{129}I	1.6×10^{7}년
γ선 방출	^{60}Co	5.3년
	^{103}Ru	39.3일
	^{106}Ru	1년
	^{131}I	8일
	^{134}Cs	2.1년
	^{137}Cs	30.1년
	^{144}Ce	284.9일
	^{192}Ir	73.8일

※ 반감기 : 원자수가 처음의 반이 되는 시간

※ ^{137}Cs의 생물학적 반감기(몸 안으로 들어온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 약 110일

3. 방사능(방사성)과 방사선의 차이는 무엇인가?

○ 방사능은 방사능(방사성)물질의 원자핵이 단위시간당 붕괴되는 수를 의미하며, 방사능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는 Bq(베크렐)을 사용함

○ 방사선은 원자핵이 붕괴될 때 방출하는 알파선(α선), 베타선(β선), 감마선(γ선)과 같은 일종의 공간을 이동하는 에너지로 사람이 방사선을 쬐였을 경우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단위는 Sv(시버트)임

4. 방사능 물질의 식품 오염경로는?

○ 원자력 발전소 사고(‘79년 미국의 TMI, ’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로 각종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고 대기로 방출된 물질이 낙진 또는 비를 통해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킴

○ 오염된 토양, 해양에서 자란 농·수산물에 흡수 축적된 방사능 물질이 결국 인체에 흡수되어 사람에 영향을 미침

5.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은?

○ 방사선은 자연방사선 및 인공방사선 2가지 구분할 수 있음

○ 자연방사선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이에 해당됨

○ 인공방사선은 TV나 전자렌지 같은 가전제품, 건강검진에 쓰이는 X-선장치, 암치료장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됨

6.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 과량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급성영향(예를 들어 구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급성방사선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급성방사선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ARS): 전신이 1 Sv이상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 1 Sv = 자연적으로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약 300배 수준으로 골수 손상과 관련된 용량이며, 소화기계, 심혈관계 등의 다른 장기는 더 높은 용량(약 >10 Sv)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참고로, 체르노빌 사고 이후(초기 2년간 100 mSv 이상 노출자를 대상으로) 오염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하여 갑상선 암이 유발된 경우는 연간 자연방사선량(2.4 mSv)의 20배 이상 수준임

7.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방사성) 검사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현재 식품 중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은 세슘(^{134}Cs + ^{137}Cs) 및 요오드(^{131}I) 두가지 항목임

핵 종	대상식품	기 준(Bq/kg, L)
^{131}I	모든식품	100 이하
^{134}Cs + ^{137}C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기타식품*	100 이하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8. 베크렐(Bq)과 시버트(Sv)는 어떻게 다른가요?

○ '베크렐(Bq)' 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단위로 베크렐선을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앙리 베크렐' 의 이름에서 유래

○ '시버트(Sv)' 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였을 때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능 노출 측정 및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한 스웨덴의 유명한 의학 및 물리학자인 '롤프막시밀리안 시버트' 의 이름에서 유래

○ 베크렐(Bq)을 시버트(Sv)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물질별로 정해진 (경구)실효선량 계수를 곱하여 구함

- 예를 들어 방사성 세슘 규격은 370 Bq/kg으로, 370Bq의 식품을 1kg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의 영향은

$370 \times \underline{1.3 \times 10^{-5}} = 0.0048$ mSv(Sv의 1/1,000)로서

↳ 방사능 세슘의 실효선량 계수

X-선 진단검진(1회)를 받는 경우의 영향(약 0.6mSv)의 1/125에 해당함

○ 또한, 방사성 요오드 규격은 300 Bq/kg으로 300 Bq의 식품을 1kg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의 영향은

$300 \times \underline{2.2 \times 10^{-5}} = 0.0066$ mSv으로서

↳ 방사능 요오드의 실효선량 계수

X-선 진단검진(1회)를 받는 경우의 영향(약 0.6 mSv)의 1/91에 해당함

○ 실효선량 계소는 방사능 단위인 베크렐로부터 생체영향 단위인 시버트로 환산하는 계수로 방사능의 종류, 화학형, 섭취경로에 의해 정해짐

9. 방사선 피폭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무엇이며,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방사선 피폭 의약품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더 이상 인체(갑상선)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요오드화칼륨정(KI)과 위장관계에서 세슘을 포획하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프루시안블루 캡슐(500mg)이 있음

10. 인터넷을 통한 요오드화칼륨정 등을 구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한지?

○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전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에서의 대규모 방사능누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요오드화칼륨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 주민예상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원전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요오드화칼륨정을 배포함

11. 의약품 대신 미역 등 해조류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지?

○ 방사선 피폭시 복용하는 요오드화칼륨정은 요오드화칼륨 130 mg(요오드로서 121.5 mg)을 함유하고 있음

○ 미역 등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어, 방사선 피폭 등에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것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움

4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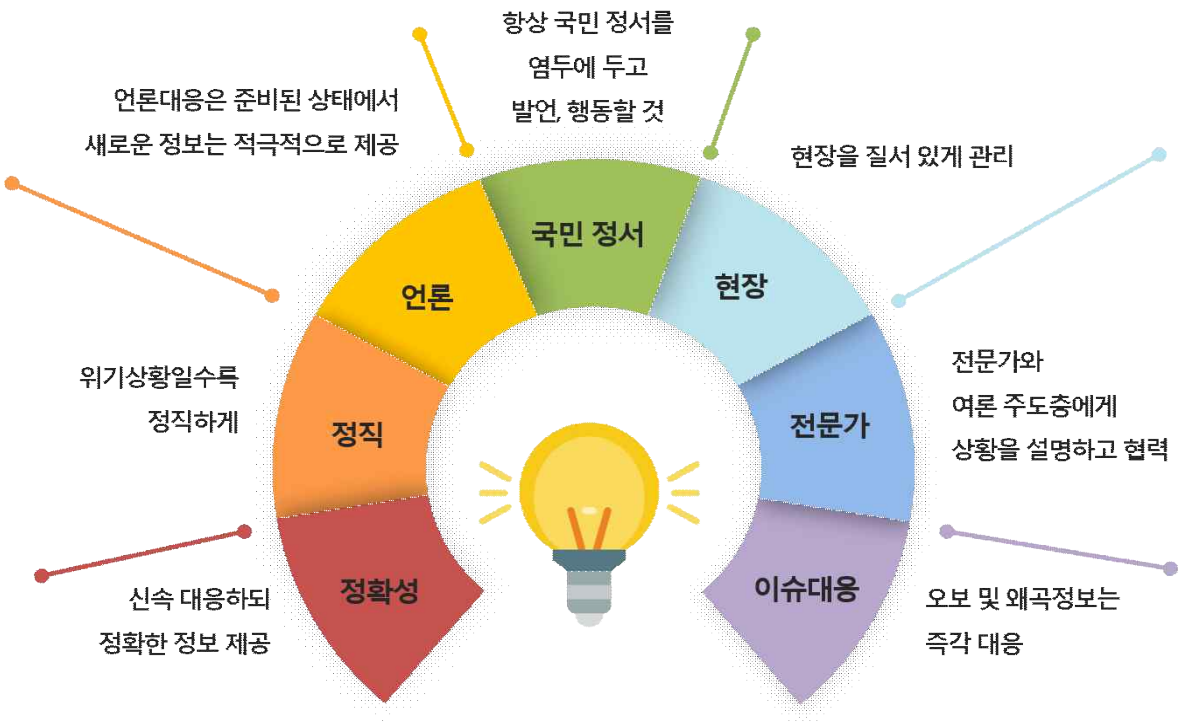
Ⅰ. 일반사항

1. 목적

○ 이 매뉴얼은 정부가 위기[1] 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빠른 복구와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됨

2. 기본 원칙

○ 위기관리 소통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의 7가지 대응원칙을 준수해 위기 인지 단계부터 복구,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호배려와 지지, 사회적·정책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위기'는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이 수록된 매뉴얼의 '재난'을 의미(예: 풍수해, 감염병 등)

3. 위기관리 소통 체계

3-1.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정하되, 설치되는 조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본부장이 총리인 경우(「재난안전법」 제14조제4항) 총리가 지정하는 장관 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②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인 경우(「재난안전법」제14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본부장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안전법」 제15조의2)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현장)**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1~3위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음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기관(또는 본부)의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로서, 위기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을 장악하며 시의 적절한 홍보를 시행해야 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공식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해국민에게 위기의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발표해야 함

* (중대본·중수본)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방대본·현장)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위기관리 소통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음

3-2.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

○ 상위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는 소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가 지정하는 별도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3호 '재난 수습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포함함

○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대변인실 등 평상시 소통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4. 위기관리 소통 업무

○ 위기관리 소통 업무는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으로 구성되며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Ⅱ. 업무별 세부 내용에서 후술함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
◆ **여론 상황 분석** - 언론보도 분석 - 온라인 여론 분석 ◆ **허위·조작정보 대응** -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 - 허위·조작정보 대응	◆ **메시지 관리** - 핵심/상황별 메시지 ◆ **매체별 소통전략** ◆ **근거자료 확보** ◆ **협업 관계망 구축** -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영향력자	◆ **공식정보 제공하기** - 공식 브리핑 추진 - 보도자료 배포 - 공식 누리집/상담창구 마련 ◆ **언론 지원하기** - 내부 지원체계 구축 - 국내/해외 언론 지원 ◆ **가용매체 활용하기** ◆ **민간과 협업하기**

Ⅱ. 업무별 세부 내용

1. 여론 분석

1-1. 여론 상황 분석

□ 언론보도 분석

○ **(필요성)** 위기 자체의 대응과 수습뿐 아니라, 대국민 소통계획 수립에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줌

○ **(기본방향)** 언론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신문(중앙일간지, 경제지 등)과 방송(지상파, 종편 등), 통신, 외신의 ▲논조, ▲제언, ▲비판을 주제별로 정리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매일, 격일, 매주 등 정해진 시간(예: 오전 10시, 오후 5시)에 하는 것이 좋음

-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 언론 반응과 함께 발표자의 태도나 표정 등 개선사항도 전달

□ 온라인 여론 분석

○ **(필요성)**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언론보도와 달리,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살펴보기 좋으며, 실시간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 **(기본방향)** 온라인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매일/기타)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포털·커뮤니티 등 주요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 전반적 분위기, 제언, 우려점 등을 유형화하여 정리. 가급적 유형별로 현재 우세한 여론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정책여론 수렴시스템(big.pr.go.kr) 활용 가능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온라인 여론은 수시

로 급변하는 만큼, 주목도가 높은 시기에는 1일보다 짧은 단위(예: 일 2회, 일 3회 등)로 분석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또는 정책고객,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분석도 병행

1-2. 허위·조작정보 대응

※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기본 원칙

ㅇ **(신속대응)** 오보는 또 다른 오보를 부르고, 유언비어는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ㅇ **(적극대응)**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면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보를 예방할 수 있음. 오보 대응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오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사실적 주장 → 반론청구권 / 명백한 오보 →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

○ 여론 상황 분석 과정에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는 별도로 분류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진위여부 파악

* 뉴스보도, 인터넷 게시글, 누리소통망(SNS) 소문 등

○ 확인 결과, 단순 오보(misinformation)는 보도설명, 정정요청 수준으로 대응

□ 허위·조작정보 대응

○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의도적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틀린' 정보로, 쟁점의 특성*과 대응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의 수준과 방법 결정

* 위법성이 명백한가, 내용이 복잡한가 등

** 해명의 공신력(어느 기관에서 해명하는가), 속도(언제 해명하는가) 등

○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수사 의뢰, 공식 브리핑을 통한 정정, 후속 콘텐츠 제작 등으로 대응하며, 하나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여러 대응 수단을 병행할 수도 있음

□ 대응 시 유의사항

① 언론의 경우

○ 공식 대응 전,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먼저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 필요

○ 통계 및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하되 당당하게 대응

* 면피용, 책임 회피용 해명자료는 없는 것보다 못함

○ 해명자료는 다른 언론 매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배포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② 온라인의 경우

○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는 확산속도가 빠르고 정정이 어려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도·설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주로 언론에서 참고) 온라인에도 콘텐츠 게시(주로 국민들이 참고)

- 설명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차트, 도표, 그래픽 등 가시성이 높은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 연성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면 좋음

* 설명자료의 형식이나 표현은 각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변형할 수 있음

2. 전략 기획

2-1. 메시지 관리

□ 핵심 메시지의 선정 [참고1]

○ 국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선정

○ 짧고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야기(스토리텔링)가 담겨 있으면 더욱 좋음

* 복문, 중문보다는 단문이 효과적이며,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음

○ 핵심 메시지의 부각을 위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좋음

> **[참고] 메시지 개발 순서**
>
> ① 핵심 단어를 먼저 선정 ➜ ② 핵심 단어 또는 동의어를 이용해 1개의 문장 또는 문구 구성 ➜ ③ 다른 사람(정책 대상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홍보 메시지 생각 ➜ ④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메시지를 3개 이상 개발 ➜ ⑤ 개발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 선택

□ 상황별 메시지 구성

○ **(핵심 메시지)** 소통 기조와 핵심 메시지가 결정되면 모든 홍보물과 홍보 활동에 반영되도록 정부 내·외부에 널리 공유(필요 시 공문, 전화 연결음, 청사 옥외 현수막 등에도 활용)

○ **(정부 대응상황 안내)**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내역과 향후 계획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안내

- 다만, 사생활 보호 침해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대책은 근거 법령이나 선례 등을 함께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국민 행동수칙)** 위기상황이 끝나지 않아 국민의 지속적인 주의

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 행동수칙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전방위적으로 확산

- 행동수칙은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전 국민의 숙지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가용 매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산

2-2. 매체별 소통전략

○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언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기의 진행 및 수습상황, 정부 대책 및 향후 계획, 주의할 점을 알려야 하거나 과도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언론 대담이나 시사기획,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누리집·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오보·허위조작정보의 정정, 긴급 공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벤트 등이 필요한 경우 활용

○ **(현수막·인쇄물 등 홍보물)** 국민 행동수칙, 상황별 핵심 메시지, 슬로건, 치유와 공감의 표현 등의 반복적 노출이 필요한 경우 활용

※ 광고는 정부 대책이나 대응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압축적이고 인상 깊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인 인식 또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캠페인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좋음

2-3. 근거자료 확보

○ 대국민 소통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 소관 핵심자료를 취합하고 적극 활용

- ▲과거 유사 사건·사고 자료, ▲기초 통계, ▲부처의 장·단기 계획, ▲감사자료 등 조직 및 정책 전반의 자료 사전 준비

- 필요한 경우,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소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2-4. 협업 관계망 구축

□ 관계자

○ **(기관 간 협의체)** 정부 내의 통일된 입장(One Voice)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 체계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 (주의) 범정부 지휘 본부의 역할이 약해지면 각 부처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하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방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현장지휘소]—[중대본]—[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홍보 협력체계 구성

-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항**은 협의회나 상시 연락망을 통해 정부 입장을 미리 정리한 뒤 발표. 기관별로 보유한 홍보 매체는 공동 활용하고, 주요 위기관리 대책은 함께 홍보

* (예) 감염병 확산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예방수칙 공동 홍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는 위기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상시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소통 능력 향상 적극 지원

□ 전문가

○ **(여론 형성의 주도자)** 전문가는 위기 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주요 전문가 등 여론 주도자들(opinion leader)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 적극 제공

○ **(위기해결의 조언자)** 전문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사항을 알려주고 제안할 수 있음

➜ 주요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해 향후 대책 마련과 메시지 수

립에 반영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위기 발생 전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이해관계자

○ 대국민 소통과 별개로,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이나 위기 해결과 깊게 연관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이고 충분한 소통 실시

* (예) 감염병의 경우,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 취약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 △(해결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 가능한 한 공식 브리핑에 앞서 피해자 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체에서 조율된 의견을 반영한 뒤 브리핑 진행

-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의 태도로,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며, 위기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위기 해결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전 설득 과정을 거쳐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편견이 심하거나 반감이 있는 관계자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야 함

□ 영향력자(인플루언서)

○ 유명 블로거, 유튜버 등 영향력자의 의견은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 초기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자들에게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면 위기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소통 실행

3-1. 공식정보 제공하기

□ 공식 브리핑 추진 [참고2]

○ **(필요성)** 위기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메시지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임

- 위기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전달하고, 필요시 현장 책임자나 실무자의 추가 브리핑이나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비공식적 경로로 상호 모순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함

○ **(시점)** 초기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향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사건 개요와 수습 상황, 대책 마련 계획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식 브리핑 실시

* 첫 브리핑은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하고, 진행 중인 위기에 대해 사태의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

- 온라인의 발달로 위기 발생 직후부터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브리핑 준비

○ **(정례화)**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수습 진행 상황 등 진전된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

-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내보내는 정보에 대한 주목도가 큰 만큼, 일 1~2회, 정해진 시간에 브리핑 진행

- 위기 상황 중 희생자가 발생하면 최고책임자(대통령, 총리, 장관 등)의 명의로 위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음

□ **보도자료 배포**

○ **(필요성)**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의 형태로 상세하게 알릴 수 있음

○ **(방식)** 각 기관별 누리집 개별 배포와 공식 누리집(후술) 공동 배포 모두 가능

○ **(기능)** ▲현황 및 정부대책의 사전 안내,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조치의 성과 등 위기과 관련된 부처의 최신 정보 전달

□ **공식 누리집 마련**

○ **(필요성)** 공식 브리핑에서는 중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면, 공식 누리집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정보를 축적함

○ **(방식)** 특별 공식 누리집을 제작하거나, 기관 누리집을 공식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로 일원화

○ **(기능)** ▲현황, ▲사실 확인, ▲정부 대책, ▲부처 입장(반론·해명 자료 포함),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신뢰할만한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

* 중요 정보는 팝업, 배너, 별도코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배치

-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사이트나 포털 등에는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모든 문의는 공식 창구로 유입되도록 안내

□ **상담 접수창구 마련**

○ **(필요성)**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대처 방안을 문의할 수 있는 공식 상담 접수창구(콜센터 등) 마련

○ **(방식)**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접수창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력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3-2. 언론 지원하기

언론과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는 위기관리 소통활동의 핵심!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 개괄

○ 최선의 위기관리를 위해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언론과 협력하는 업무를 강화해야 함

○ 위기 보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 및 정책 등 자료 제공, ▲재난보도준칙 준수 및 협조요청, ▲공동 현장취재 추진,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재난주관 방송사 및 국가 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지원 등의 업무 추진

□ 내부 지원체계 구축

○ 언론의 취재나 인터뷰 요청은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에서 일괄 취합하여 정책부서에 전달

-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은 인터뷰의 주제와 일정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언론 대응 수칙과 요령을 사전에 숙지시킴

○ 정책부서에서는 사전에 ▲기자 이름, ▲소속, ▲면담 주제 및 쟁점, ▲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핵심 메시지, ▲예상질문과 답변, ▲관련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

* 인터뷰 요령은 브리핑 요령과 유사함. 전화 인터뷰는 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방송 인터뷰는 방송되는 시간을 고려해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는 것이 좋음(길게 답변한 경우, 핵심 내용이 편집되어 전달되지 못할 수 있음)

□ 국내 언론 지원

○ **(사전 공지)** 기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브리핑 등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함

- 사전에 관계부처와 출입기자 명단을 구성하고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확보

○ **(현장 준비)** 취재진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 **(시설 설치)** 다수의 기자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본부, 현장 등)에 브리핑실과 취재지원센터 설치**[참고3]**

* 기자(펜기자, 방송기자 구분)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브리핑실과 장비 등 지원 시설 점검

○ **(자료 공유)** 브리핑과 관련된 자료는 기자들에게 배포·공유

* (예) 대국민 메시지, 보도자료·배경자료, 성명서·설명자료·사과문 및 질답(Q&A), 통계자료, 재난보도준칙 등

○ **(요구 대응)** 기자들의 문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서면 등 활용),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정보 수요 충족

-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

○ **(현장 관리)** 취재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은 언론의 출입 가능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하여 혼란 예방

*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나 위험지역 등 출입제한구역에는 취재 제한선을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해야 함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홍보담당자의 인솔하에 현장을 방문·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취재 기자들 중에는 취재기자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취재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

□ **해외 언론 지원**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제협력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주므로, 필요한 경우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외신의 취재활동 적극 지원

* 기자단 구성 시 외신기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신 취재지원 계획 마련

○ 필요시 공식 브리핑을 번역하여 외국에 송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신대상 공식 브리핑 마련

3-3. 가용매체 활용하기

각 부처에서 보유한 홍보수단(매체) 적극 활용

○ 오프라인 매체

- 옥외 전광판, 현수막, 실내 영상패널, 기관별 홍보물 등이 있으며 소통실의 '보유매체 협업' 기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매체

- 기관별/정책별 공식 누리집, 누리소통망, 온라인 기자단의 자체 채널 등이 있음

[참고] 온라인 소통 전략

① 메시지는 단일하게, 형식은 다양하게

- 온라인 홍보도 전체적인 홍보 계획 속에서 한 목소리(One Voice)를 유지해야 함
- 온라인 콘텐츠의 핵심은 형식의 다양화이므로, 브리핑 등 정부 공식 입장을 텍스트뿐 아니라 한컷뉴스, 동영상, 플래시, 만화,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② 경청하라

- 10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9는 공감에, 1은 정보전달에 할애

- 정부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진실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③ 맞춤형으로 하라

- 주부, 학생,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홍보 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대상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대상별 맞춤 정보를 차별화하여 제공

④ 맞서지 마라

- 온라인 댓글 등이 부정확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내포하더라도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충분히 해명하는 등 추가적인 소통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⑤ 담당자의 대처가 정부의 대처로 해석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 및 누리소통망(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에서 가볍게 이야기(답변)하는 내용도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유의

※ 정부 가용매체가 아닌, 사적인 온라인 계정이라고 해도 담당자나 기관장 등 정부 관계자가 올린 글은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본질과 다른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기 쉬우므로 개인적 활동 또한 유의

3-4. 민간과 협업하기

○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게 위기 관련 정보를 접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평소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는 민간 유력 채널에서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참고1 위기관리 소통 메시지 작성 시 고려사항

□ 기본적인 고려사항

청자 [누구에게 하는가]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매체 [어떻게 전달하는가]
ㅇ 전체/일부 ㅇ 인구통계적 특성 ㅇ 위기와의 관련성 ㅇ 피해의 정도	ㅇ 진행상황/사실의 전달 ㅇ 오보, 허위조작 정보 대응 ㅇ 관계자/국민의 협조요청	ㅇ 공식 브리핑(TV, 현장 등) ㅇ TV, 라디오 등 방송 ㅇ 신문 등 인쇄 ㅇ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 ㅇ 기타(전화 등)

□ 메시지 구성 예시

1.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2. 사건개요 설명
   - (6하원칙)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3.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
4. 원상회복 노력 천명

참고2 공식 브리핑 준비 참고사항

1. 발표자(briefer)의 지정

○ 공식 브리핑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로 지정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현재 상황, 정부 조치, 향후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표함

- 핵심 메시지 발표자가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배석시켜 질의응답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발표자의 직함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 보다는 직무형 직함(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메시지의 중요성에 따라 발표자를 구분할 수 있음(예: 대통령, 총리 등)

2. 브리핑 준비

○ 위기 상황에서 대국민 발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핵심 메시지, ▲발표 내용, ▲발표 자세, ▲예상 질답, ▲참고자료(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와 용어, 위로나 유감 표현) 등을 준비

- 브리핑은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임을 숙지하고, 사전 예행연습

- 한 문장은 12~14개 단어로 구성하고, '첫째', '둘째' 등 발표문을 구조화하며, 종결어미를 자주 사용해 문장을 간결화

○ 복장은 비상근무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한 화장이나 장신구 등은 피해야 함

3. 발표자의 자세

□ **(기본 자세)** 여론은 유동적이므로, 진실한 자세로 일관되게 설득하면 변할 수 있다는 점 명심

○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에 대해 쉽게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정부가 사태수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강조해 문제해결 의지가 있음을 각인

*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이나 대책 없이 정부 성과만을 나열하는 자화자찬식 발표는 지양

○ 언론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대해야 함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함

- 언론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됨

- 언론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을 공평하게 대해야 함

□ **(감정의 통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발표

○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 유지

* 변명이나 핑계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지양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송구함 표시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 **[!]**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실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 협력의 동력을 저해함

□ **(실수 최소화)** 모두가 예민한 상황인 만큼, 공식 석상에서 품행, 표정에 유의하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 등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4. 브리핑 시 유의사항

□ **(정확성)** 확인되지 않은 자료, 확정되지 않거나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발표해서는 안 됨

○ 브리핑 등 대국민·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에 대한 최신 통계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함

* **[!]**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 상실

○ 주관적 감정이나 섣부른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와 사실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지 않음

□ **(투명성)** 위기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공감을 얻어야 함

○ 부정적 사안이라도 알려져야 할 사실이라면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전후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

* **[!]** 문제가 있을수록 미리 알리고 대응해야 함(사후 해명은 공신력에 상처를 줄 수 있음)

□ **(적극성)** 언론에 보도되어 이슈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자가 묻기 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

○ 언론 오보나 온라인상의 각종 유언비어, 비판, 거짓 정보 등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는 노력 지속

*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짐

□ **(일관성)** 정부의 발표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이나 입장이 변경되면 합리적으로 설명·설득해야 함

○ **(기관 간 일관성)**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은 반드시 조율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삼가야 함

○ **(내용의 일관성)** 한 번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 **[!]** 말바꾸기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신중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

○ 위기의 원인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 시 신중을 기하고, 특정 집단의 반발을 야기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함

-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및 자극적인 표현은 피해야 함

○ 사전에 피해자 및 가해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결정

□ **(용이성)**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

○ 업계에서 통용되는 전문용어나 약어, 영어 등 외국어의 사용을 삼가고, 언론이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발표

5. 상황별 질의응답 요령

□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

○ 발표자가 대답할 수 없는 전문적·실무적인 내용은 섣불리 답변하지 말고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

-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예단,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음

- 통계수치의 정확성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표현 사용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여 답변을 요구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으로 답변

□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질문한 경우

○ 비보도요청(Off The Record)이나 단순 답변거부(No Comment)는 지양하고,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 (예) "상황이 정리되면 추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비보도요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라도 무시될 수 있음

- 답변거부는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 암시를 줌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을 배제한 채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응답

* (예) "말씀하신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방대한 범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의 경우

○ 답변은 결론부터,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언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한번 더 되풀이

○ 여러 질문을 동시에 받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변이 가장 쉽거나 간단한 질문에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는 질문을 다시 확인

□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질문할 경우

○ 잘못된 사실이나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해당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

* (예)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경우**

○ "이번 상황이 '예'나 '아니오'(혹은 'A냐 B냐)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제한 후 이에 대해 성실하게 충분히 설명

□ **단언이나 확언을 요구하는 경우**

○ 확언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임을 언급한 뒤 위기관리 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 강조

* (예)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3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를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 결정

□ **장소 선정**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서, 현장 대책본부의 활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취재진의 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 취재지원실은 일반적으로 50명 이상 수용,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고 취재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을 구비하는 것이 적합하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설치 시점 :**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에 설치

□ **기능**

① 수시 상황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②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③ 현장 취재단 지원

- 취재 송고시설 마련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요청

□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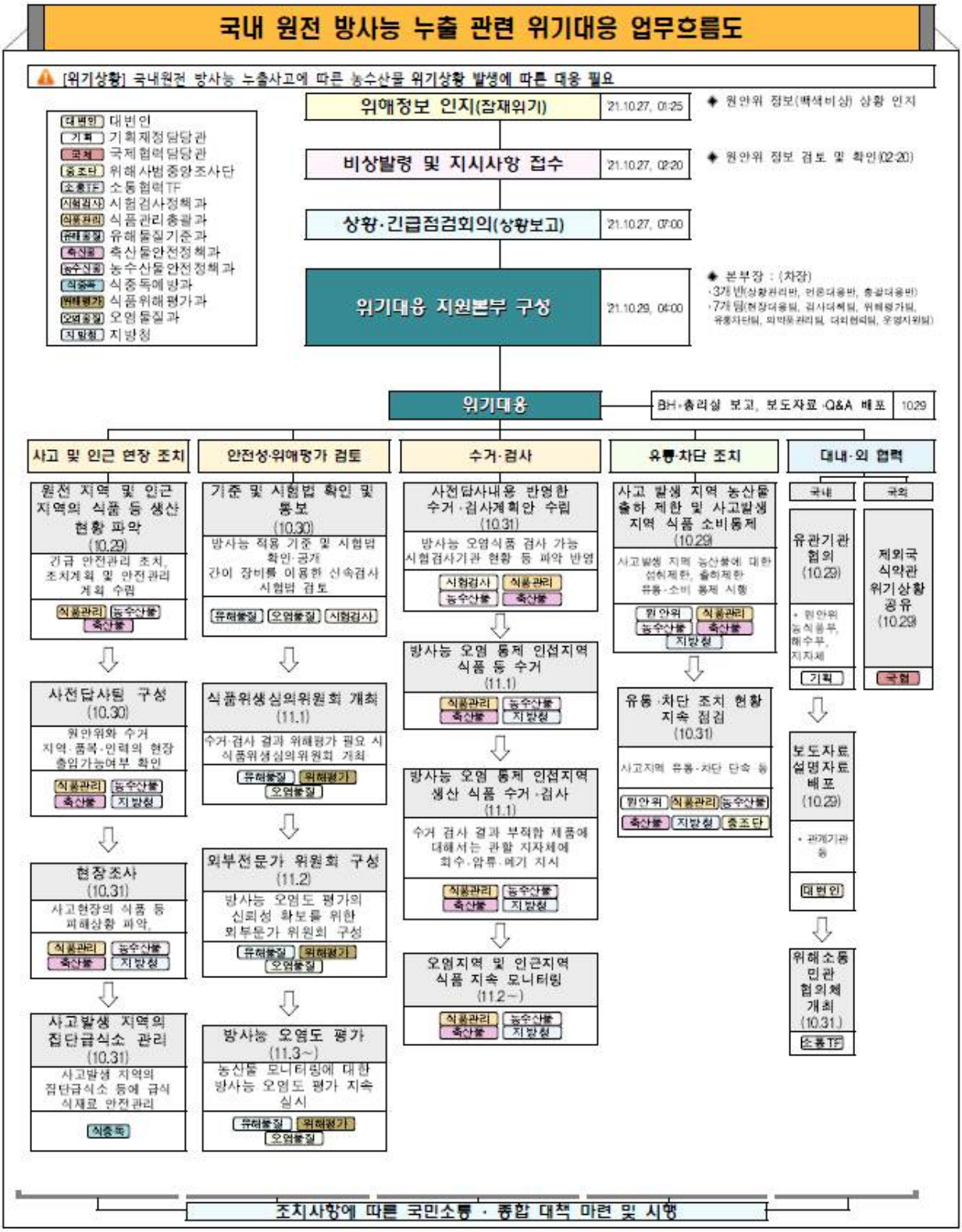
○ **(언론지원)** ① 취재등록부 관리 등 언론 연락체계 유지, ② 보도자료 배포(이메일, 문자 등), ③ 언론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현장안내 등)

○ **(센터관리)** ① 현장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 시설 설치*, ② 현장 취재제한선 설치 요청, ③ 공동 현장취재 관련 편의 제공(이동용 차량 준비 등)

* 현장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장소나 시설 활용

(물품 예시) 마이크, 배경막(기관 로고 확인), 책상·의자,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5 위기대응 업무흐름도


국내 원전 방사능 누출 관련 위기대응 업무흐름도
[위기상황] 국내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농수산물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필요
대변인 대변인
기획 기획재정담당관
국제 국제협력담당관
중조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통TF 소통협력TF
시험검사 시험검사정책과
식품관리 식품관리총괄과
유해물질 유해물질기준과
축산물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식중독 식중독예방과
위해평가 식품위해평가과
오염물질 오염물질과
지방청 지방청
위해정보 인지(잠재위기) 21.10.27. 01:25
◆ 원안위 정보(백색비상) 상황 인지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접수 21.10.27. 02:20
◆ 원안위 정보 검토 및 확인(02:20)
상황·긴급점검회의(상황보고) 21.10.27. 07:00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 21.10.29. 04:00
◆ 본부장 : (차장)
·3개 반(상황관리반, 언론대응반, 총괄대응반)
·7개 팀(현장대응팀, 검사대책팀, 위해평가팀, 유통차단팀, 의약품관리팀, 대외협력팀, 운영지원팀)
위기대응
BH·총리실 보고, 보도자료·Q&A 배포 10.29
사고 및 인근 현장 조치
원전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식품 등 생산 현황 파악 (10.29)
긴급 안전관리 조치, 조치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사전답사팀 구성 (10.30)
원안위와 수거 지역·품목·인력의 현장 출입가능여부 확인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지방청
현장조사 (10.31)
사고현장의 식품 등 피해상황 파악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지방청
사고발생 지역의 집단급식소 관리 (10.31)
사고발생 지역의 집단급식소 등에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식중독
안전성·위해평가 검토
기준 및 시험법 확인 및 통보 (10.30)
방사능 적용 기준 및 시험법 확인·공개
간이 장비를 이용한 신속검사 시험법 검토
유해물질 오염물질 시험검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11.1)
수거·검사 결과 위해평가 필요 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유해물질 위해평가 오염물질
외부전문가 위원회 구성 (11.2)
방사능 오염도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위원회 구성
유해물질 위해평가 오염물질
방사능 오염도 평가 (11.3~)
농산물 모니터링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평가 지속 실시
유해물질 위해평가 오염물질
수거·검사
사전답사내용 반영한 수거·검사계획안 수립 (10.31)
방사능 오염식품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등 파악 반영
시험검사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방사능 오염 통제 인접지역 식품 등 수거 (11.1)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지방청
방사능 오염 통제 인접지역 생산 식품 수거·검사 (11.1)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압류·폐기 지시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지방청
오염지역 및 인근지역 식품 지속 모니터링 (11.2~)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지방청
유통·차단 조치
사고 발생 지역 농산물 출하 제한 및 사고발생 지역 식품 소비통제 (10.29)
사고발생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섭취제한, 출하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행
원안위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지방청
유통·차단 조치 현황 지속 점검 (10.31)
사고지역 유통·차단 단속 등
원안위 식품관리 농수산물 축산물 지방청 중조단
대내·외 협력
국내
국외
유관기관 협의 (10.29)
• 원안위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기획
제외국 식약관 위기상황 공유 (10.29)
국제
보도자료 설명자료 배포 (10.29)
• 관계기관 등
대변인
위해소통 민관 협의체 개최 (10.31.)
소통TF
조치사항에 따른 국민소통 · 종합 대책 마련 및 시행

6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개 요

○ **(목적)** 청와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긴급구조기관(소방 ·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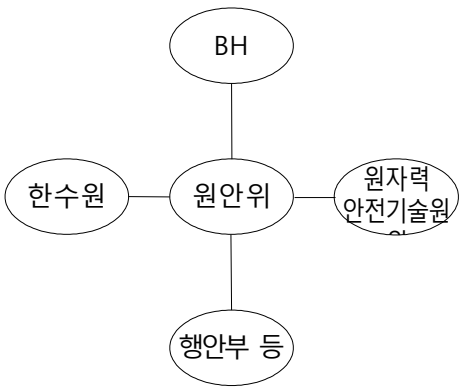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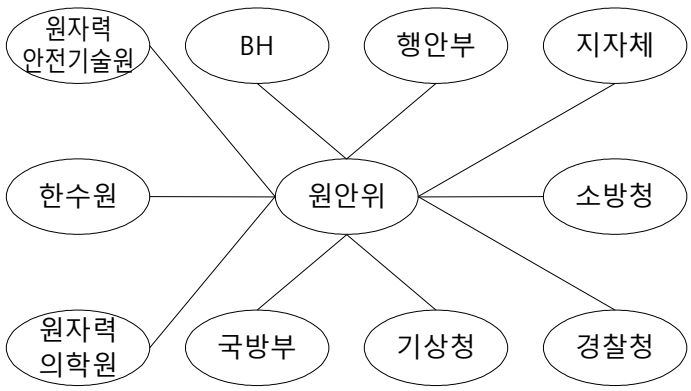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18부 •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상황판단/대책회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안위(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지방자치단체 등

방사선 백색비상(사고 초기단계)	방사선 청색/적색비상(중대본 운영단계)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지역・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상황파악 및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7 공문서 등 작성(예시)

1. 유통 판매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방사능 오염 유제품 등 유통 판매 금지

1. 최근 분유·우유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분유 등이 함유된 식품에서 잇따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2.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된 관련제품을 현재 수거·검사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거·검사 대상 제품에 대하여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제조·가공·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00.00.00.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지조치**하오니,

3. 각 시·도 및 지방청에서는 붙임의 ○○개 제품 현황 중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적합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업소에 별도 보관 및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협회에서는 회원(비회원 포함)들에게 동 내용을 공지하여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제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5. 검사결과 적합된 품목은 판매금지를 신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장(식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장(식의약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 인천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 대전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대한제과협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재제염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해조류가공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사)한국제분공업협회, (사)한국급식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2. 수거 검사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수거·검사 지시

최근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 환자발생 등 인명피해 사고 보도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수거·검사를 지시하오니 그 결과를 '00. 00. 00.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거기관 : 관할 지방식약청(단, 판매처가 타 지방청 관할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방청에 협조 요청)
2. 수거대상 : 분유 및 분유(우유)가 함유된 가공식품
3. 검사항목 : 방사능 물질
4. 수거건수 : 제품별 2~3건
5. 수거방법 : 분유 함량이 높은 빵 및 초콜릿류 제품 우선 수거

붙임 1. 분유(우유) 함유 ○○산식품 수입현황(0000.00.00.~00.00)
2. 수거·검사 결과보고(양식). 끝.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3. 회수 폐기(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회수·폐기 실시

1. 관련 : OOOOO-○○○○호(0000.00.00), ○○○○호(0000.00.00)

2. 우리 처에서는 분유 등 유제품 함유 일부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하여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판매금지 제품 중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시·도(시·군·구) 및 지방청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붙임의 미회수 제품이 '00.00.00.까지 모두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미회수 품목현황. 끝.

수신자 각 시도(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4. 회수 폐기(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식품 압류 및 폐기 조치 지시

1. 최근 방사능 누출사고 인근지역 우유의 방사능 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국내산 우유 함유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지시하니, 신속한 회수·폐기 등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조치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회하는 등 회수·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사	(주)○○
소재지	서울시 ○○구 ○○동	부산시 ○○ ○○동
제품명	○○	○○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5.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비상 근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색비상 발령 통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 위기상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의 각 반 및 팀에서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14:00까지 진행상황을 상황관리반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매일 아침 개최되는 일일상황보고회의에 참석(팀원 중 과장 및 사무관1명 포함)하여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 위기상황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 끝.

수신자 식약처 본부 및 지방청 전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 부서
시행 운영지원과-○○○○ (0000.00.00.)

6.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사능 누출사고 인근지역의 방사능 오염 식품 조사 협조 요청

우리 처는 최근 울진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조사를 위한 검체 수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0000.00.00. ~ 별도 지시일까지
2. 장소 : 울진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 수거지역은 원안위에서 선정한 오염검사 대상 지역으로 한정
3. 방법 : 식약처, 농식품부, 지자체 등으로 수거 조 편성(5인/조), 기타 검체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전교육 실시
   ※ 검체 수거에 필요한 준비물, 개인보호 장비 등은 식약처에서 일괄 준비 예정

수신자 농식품부(소비정책과), 각 시도(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끝.

시행 위해예방정책과-○○○ (0000.00.00)

7. 관련 업계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사능 오염 식품 수거에 대한 협조 요청

1. 관련 : 식품관리총괄과-○○○○호(0000.00.00)

2. 우리 처에서는 분유 등 유제품 함유 일부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하여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판매금지 제품 중 일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등에 연락하여 붙임의 미수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고 행정기관에서 수거·검사를 위하여 판매장 등에 출입·검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미수거 제품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미수거품목업체별현황
2. 미수거품목현황. 끝.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8. 교육 홍보 자료 배포

방사능 물질 오염관련 식품 유통 판매 금지에 따른 당부말씀

정부는 방사능 오염식품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하고 00월 00일자로 해당식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판매금지 식품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완료하여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9.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서 양식

00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적색비상 발령

('00.00.00(O), △△△과 □□□과장, 000-000-0000)

□ 정책보고 ■ 상황·정보 □ 회의보고 □ 행사보고	■ 방침 필요 □ 지시사항 이행

< 정보내용 >

○ 일시 : '00.00.000(O)
○ 내용 : 원안위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로부터 적색비상 발령 및 유관부처 긴급대응 지시사항 통보
- OO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 식품 섭취제한 조치 등 지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 참석자 :

□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 점검

○

□ 점검회의 결과(향후 계획)

○

1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문서 양식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또는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

나. 유 통 기 한 : 0000. 00. 00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방사능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

바. 영업자주소 : ○○도 ○○시 ○○동 ○○번지

사. 연 락 처 : 000-000-0000

아.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도**○○**시** ○○과(담당자 ○○○)

11. 수거·검사 일일 현황보고 양식

수거·검사 일일 현황 보고

기관명 :식약처, 시도

(단위 : 건)

	수거현황	검사결과			
		계	적합	부적합	진행중
당일 (○월○일)					
누계					

수거·검사 세부현황

기관명 :식약처, 시도

연번	제품정보				수거검사				
	제품명	식품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업소 (식품등 수입판 매업소)	수거장소	수거일자	검사기관	검사완료 일자	검사결과 (기준)

※ 수거검사 세부현황 자료는 누계자료에 추가 수거된 자료, 추가 검사 완료된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

12. 판매 금지 식품 점검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종류	식품제조업, 식품수입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 초등학교주변 판매점, 도소매업 등 기타 식품판매업		

<table>
<tr><th>구분</th><th>점검사항</th><th>결과</th></tr>
<tr><td>판매금지
식품의 취급</td><td>판매금지 식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 여부</td><td></td></tr>
<tr><td>판매금지
대상 식품별
재고량
(필요 시
별지작성)</td><td>
<table>
<tr><th>제품명</th><th>수입업소</th><th>유통기한(제조일자)</th><th>봉인(재고)량(kg)</th></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보관량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위한 봉인 조치
</td><td></td></tr>
<tr><td>판매금지
대상 식품의
판매처
(필요 시
별지작성)</td><td>판매금지 대상 식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경우 판매처 및 판매량 조사
<table>
<tr><th>제품명</th><th>수입업소</th><th>유통기한</th><th>판매처</th><th>소재지</th><th>판매량(kg)</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r><td>OOOO
검출제품
압류</td><td>
<table>
<tr><th>제품명</th><th>수입업소</th><th>유통기한(제조일자)</th><th>보관량(kg)</th></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r><td>기타
지도사항</td><td>판매금지 품목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봉인조치 실시 등</td><td></td></tr>
</table>

본인은 상기 제품 보관량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판매(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0000.00.00.

확인자 업소명 직위 이름(인)

조사자 소속 직급 이름(인)

13. 압류 회수 현황 보고

압류회수 세부현황													
기관명 :식약처, 시도													
연번	제품정보			압류・회수							조치		
											폐기	방법	
	제품명/식품유형	제조일자(유통기한)	제조업소(식품등수입판매업소)	회수영업자	명령기관	명령일자	완료일자	회수대상(kg)	회수량(kg)	회수율(%)	일자	반송	용도전환 등
※ 회수폐기 세부현황 자료는 누계자료에 추가 압류・회수된 자료, 추가 조치된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													

14. 유통 판매 금지 식품 현황

순번	품목명	수입업체	제조회사	유통기한(제조일자)	관련사진
1	OOOOO	OOO	OOOO	0000.00.00.	
2					
3					
4					
5					
6					
7					
8					
9					
10					

15. 유통판매 금지 제품 수거 검사 현황

(0000.00.00. 00:00현재/식약처)

□ 검사대상 00개 품목 중 검사 완료 00개 품목(검출 00개 품목)

구분	검사대상 총계(A)	수거 품목(B)	검사현황			검사중 (B-C)	수거중 (A-B)	유통금지
			소계(C)	불검출 (적합)	검출 (부적합)			
누계								
일계 (00.00)								

소관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연락처	전화) 043-719-1718 043-719-1723 팩스) 043-719-1710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